부록

1. 체크리스트
2. 보고회 주요내용
3. 경관계획(안)에 대한 행정절차상 개최결과
4. 충남도청 관련부서 협의 의견
5. 충청남도 경관위원회 심의 의견
6. 충청남도 경관위원회 조건부 의결에 대한 조치

1.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의 목적

- 당진시 경관계획의 체크리스트는 당진시의 특성을 반영한 독특하며 정돈된 경관을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품겨 있는 경관을 효율적으로 유도· 관리하기 위함에 목적을 둠

체크리스트의 구성

- 본 경관계획의 체크리스트는 경관구조, 경관유형, 경관중점관리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경관구조별 체크리스트는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으로 구성됨
  - 경관권역은 푸른중심권역, 청정문화권역, 해안교류권역
  - 경관축은 녹지경관축, 수변경관축, 도로경관축
  - 경관거점은 자연경관거점, 역사문화경관거점, 상징경관거점, 관문경관거점
- 경관중점관리구역 체크리스트에는 경관적으로 보존, 관리, 형성이 필요한 지역 총 6곳을 설정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제시함
- 경관유형별 체크리스트는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색채, 야간, 간선도로, 조망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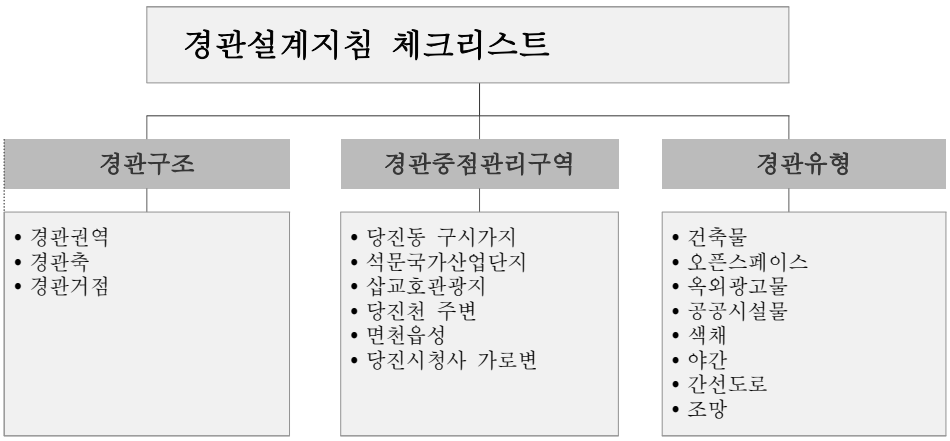

체크리스트의 운영

- 경관계획의 체크리스트는 도시계획심의, 경관심의, 건축심의, 건축허가, 설계자문 등의 기준으로 활용함
- 체크리스트는 사전협의를 통해서 기준을 미리 제시하도록 하며, 이행여부에 따라 행위를 허가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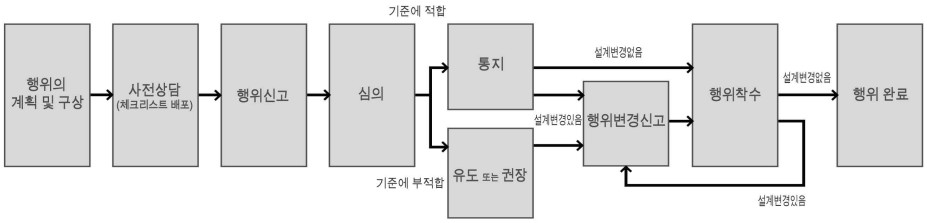

체크리스트 적용 범위 및 활용

-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여부에 따라 심의대상과 심의제외 대상으로 구분
- 심의대상이 되는 행위는 경관위원회 및 경관관련위원회(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옥외광고물 위원회 등)의 심의도서에 경관설계지침의 반영여부를 검토한 체크리스트를 포함하여 제출하고, 심의대상이 아닌 대상은 인허가시 사전협의를 통하여 경관설계지침의 점검사항을 체크함

- 축사, 재배사, 창고 등에 대한 농어촌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계획위원회의 심의분야인 개발행위심의시 허가대상에 대한 체크리스트 운영하며, 개발행위 관련 담당과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기적으로 협조

구분	관련계획 및 대상	적용시기	활용내용	운용
공공	도시기본계획	경관·미관계획시	경관계획 참조 반영	위원회 심의
	도시관리계획	경관·미관지구 지정 및 정비시	경관계획 참조 반영	위원회 심의
	지구단위계획	경관부문계획시	경관계획 및 설계지침 반영	위원회 심의 – 필수사항 반영 – 권장사항 위원회 결정
	공공발주 (공공건축물, 시설물 등)	계획 및 설계시	경관설계지침 반영 체크리스트 제출	심의대상 위원회 심의 – 필수사항 반영 – 권장사항 위원회 결정
				심의제외대상 – 필수사항 반영 – 권장사항 적용여부 확인
민간	대규모 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경관계획 참조 반영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반영	위원회 심의시 반영 검토 – 필수사항 반영 – 권장사항 위원회 결정
	일반건축물 (주거, 상업, 업무, 공업건축물 등)	건축계획수립시	경관설계지침 자가점검 건축인허가시 체크리스트 제출	건축허가(심의)대상 – 필수사항 반영 – 권장사항 위원회 결정
				건축허가대상 – 필수사항 반영 – 권장사항 확인
				건축신고대상 – 필수·권장사항 적용여부 확인
		옥외광고물 설치시	경관설계지침 자가점검 광고물인허가시 자가점검 리스트 제출	허가(심의)대상 – 필수사항 반영 – 권장사항 위원회 결정
				허가대상 – 필수사항 반영 – 권장사항 확인
				신고대상 – 필수·권장사항 적용여부 확인
	개발행위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시	경관설계지침 자가점검 개발행위인허가시 체크리스트 제출	허가(심의)대상 – 필수사항 반영 – 권장사항 위원회 결정
				허가대상 – 필수·권장사항 적용여부 확인

푸른중심권역 체크리스트

키워드	지침내용	평가
조망권 확보	· 아미산으로의 조망권 확보	
	· 주요 조망점에서 아미산으로의 통경축 확보	
	· 산지 연접부의 공동주택 단지 내부의 통경축 확보 유도	
	· 아미산 스카이라인 조망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높이를 관리	
자연경관으로의 접근성 향상	· 산지 내 기존 등산로의 정비 및 개설을 통합 접근성 향상	
	· 기존 주변 산림의 전망대 이용활성화를 위한 안내시설 설치	
	· 아미산에서 시가지를 조망하기 위한 전망대 설치	
하천 및 하천변 관리	· 당진천 등 하천변에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그린 네트워크 형성	
	· 당진천 정비완료구간 주변의 위해경관 정비	
	· 당진천과 당진동 중심지역과의 접근성 강화	
	· 당진천변 연접부에 조성된 옹벽, 담장 등의 위해시설 제거·개선	
	· 풍부한 식재 조성으로 녹시율 확보 및 보행자를 고려한 녹도 조성	
이미지 창출을 위한 경관관리	· 32번 국도변의 역동적 경관연출	
	· 32번 국도변의 중앙분리대를 녹지로 조성	
	· 국도변 건축물 입면 및 옥외광고물 정비	
	· 국도변 진입부 상징적 거점 경관 형성	
	· 당진동 신청사 주변 상징가로 및 개발지 경관관리	
	· 당진동 신청사 주변 상징가로를 조성하여 보행자 공간을 확보	
	· 대덕수청지구 등 신규로 조성되는 개발지에 녹지공간 최대 확보	
	· 기존 아파트 경계부에는 녹색담장을 조성	
야간조명으로 당진시의 이미지 강화	· 당진시 경계부에 야간조명을 특화하여 진입부 상징성 강화	
	· 당진신청사의 야간조명을 업라이팅 연출하여 상징성 강화	
	· 기존 공공건축물을 활용하여 야간경관 형성	
매력적인 도심부 경관 형성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당진천과 용연천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다양한 접근로 개설	
	· 공공기관부지에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휴게공간 조성	
중심상업지역 경관관리	· 터미널 및 구시가지의 무분별한 옥외광고물 정비	
	· 보도포장 패턴의 차별화	
	· 시가지 내 가로에 주변산지와 연계되는 가로수로 녹지축 형성	
	· 심플한 가로시설물 디자인으로 가로경관 형성	
산업단지 경관관리	· 산업단지 공장의 입면차폐를 위한 식재	
	· 산업단지내 위해경관을 제거하고 보행공간의 확보	
	· 산업단지 진입로 주변 옥외광고물 정비	

자가진단	3 : 우수	2 : 양호	1 : 보통	0 : 미흡	× : 해당사항없음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청정문화권역 체크리스트

키워드	지침내용	평가
대규모 저수지 주변 수변경관 형성	· 대호지, 삼봉저수지, 면천저수지 주변 생태교육을 테마로 생태공원 및 경관 연출	
	· 호수변 생태탐방로 및 경관도로 조성	
	· 호수변 조망 데크 및 관찰데크 등의 친수시설 도입	
자연경관으로의 접근성 향상	· 월망산, 지름이산 등산로의 정비 및 개설을 통합 접근성 향상	
	· 기존 주변 산림의 전망대 이용활성화를 위한 안내시설 설치	
	· 아미산에서 시가지를 조망하기 위한 전망대 설치	
이미지 창출을 위한 경관관리	· 면천IC 진입부의 상징조형물 설치	
	· 면천IC 주변 공휴지에 휴게 및 만남의 장소 조성	
야간조명으로 당진시의 이미지 강화	· 면천읍성에 야간조명을 특화하여 이미지 강화	
	· 면천읍성내 성곽시설에 야간조명을 업라이팅 연출하여 상징성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읍면소재지의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한 휴게공간 조성	
농촌지역 중심시가지 경관관리	· 합덕터미널 리모델링	
	· 중심읍면소재지의 무분별한 옥외광고물 정비	
	· 주민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가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보도포장 패턴의 차별화	
	· 심플한 가로시설물 디자인으로 가로경관 형성	
산업단지 경관관리	· 합덕 테크노폴리스 및 합덕지방산업단지 공장의 입면차폐를 위한 식재	
	· 산업단지 내 위해경관을 제거하고 보행공간의 확보	
	· 산업단지 진입로 주변 옥외광고물 정비	

자가진단	3 : 우수	2 : 양호	1 : 보통	0 : 미흡	× : 해당사항없음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해안교류권역 체크리스트

키워드	지침내용	평가
산업단지 경관인식 전환을 위한 녹화	· 산업시설과 주변지역과의 완충지역으로 녹지대 형성	
	· 산업시설의 경계부에 녹시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가로수 식재	
	· 산업시설내의 시각적 차폐를 위한 경관완충지역 및 식재	
	· 산업단지 내 위해경관을 제거하고 보행공간의 확보	
	· 산업단지 진입로 주변 옥외광고물 정비	
	· 석문국가산업단지 가로수 및 야간경관 조성	
이미지 창출을 위한 경관관리	· 송악IC 진입부의 상징조형물 설치	
	· 송악IC 주변 공휴지에 휴게 및 만남의 장소 조성	
	· 국도 38(77)호선 녹색중앙분리대 설치	
	· 해안 항포구 (삽교호,맷돌포,안섬,한진,성구미,장고,왜목,도비도 등) 변 야간조명 설치	
	· 석문, 대호방조제의 상징조형물 및 휴게쉼터 설치	
	· 석문, 대호방조제 주변 상점가의 옥외광고물 정비	
매력적인 관광지 조성	· 삽교,왜목, 도비도 옥외광고물의 정비	
	· 삽교호 관광지 버스터미널 리모델링	
	· 펜션 및 음식점의 경관관리 및 옥외광고물 관리	
	· 난지도 관광지 경관관리	
	· 대호지 등 자연 생태교육을 테마로 생태공원 및 경관 연출	
	· 호수변 생태탐방로 및 경관도로 조성	
	· 호수변 조망 데크 및 관찰데크 등의 친수시설 도입	

자가진단	3 : 우수	2 : 양호	1 : 보통	0 : 미흡	× : 해당사항없음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경관축 체크리스트

키워드	지침내용	평가
녹지경관축	· 산지로의 도시형 녹지축을 설정하고 연결형 녹지축 조성	
	· 산으로의 도시형, 택지형, 블록형, 연결형 통경축을 확보	
	· 중앙분리대, 생태터널 등으로 단절된 녹지축 회복	
수변경관축	· 자연형단면, 친수공간, 주변시설물 등의 경관관리	
	· 당진천의 주변지역과 연계 및 식재공간 확보 등의 경관관리	
	· 상류지역 생태측면을 고려한 자연형 하천 도입	
	· 자연환경 우수지역은 최대한 경관 보전(초대천, 남원천, 대호지 등)	
도로경관축	· 고속도로변의 인공구조물, 건축물, 진입경관 관리	
	· 주간선도로(국도 38)등 테마를 부여한 가로경관의 연출 및 녹지축 조성	
	· 석문국가산단, 송산일반산단의 녹시율 증대	
상징가로축	· 당진동 중심축은 문화가로축으로 형성(신청사 상징축)	
생태회랑축	· 문화회랑축 조성(당진-순성-면천-합덕)	
	· 웰빙테마길(당진동-아미산)	
	· 환경테마길(아미산-면천IC)	
	· 풍경테마길(면천IC-면천읍성)	
	· 역사문화길(면천-순성-합덕)	

자가진단	3 : 우수	2 : 양호	1 : 보통	0 : 미흡	× : 해당사항없음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경관거점 체크리스트

키워드	지침내용	평가
주요산, 수변 공원화 및 이미지 개선	· 주요산과 주변 연결로에 대한 생태적 테마 부여(아미산, 몽산, 다불산, 이배산, 봉화산 등)	
	· 등산로가 만나는 주요 결절점에 휴식공간 조성	
	· 등산로 진입부에 자연소재를 이용한 관문형 조형물 설치	
	· 녹지 단절구간에 대해서는 에코브릿지 조성	
	· 하천(호수)변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조성	
	· 무분별한 옥외광고물 정비	
조망공간을 특성화	· 아미산 및 항포구(왜목항, 도비도항, 삽교호, 한진포구, 음성포구, 삽교호 등)에 전망대 설치	
	· 해안산책로, 입체 조망데크 조성(자연친화적인 재료 사용)	
상징경관 연출	·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주변 식재 확충 및 진입도로 녹화	
	· 문예의 전당 야간경관 조성 및 안내표지판 설치	
	· 면천역사문화지구 경관형성	
	· 면천 진달래 문화옛공원 및 역사문화거리 조성	
	· 합덕제 부지 및 주변 녹지 확충 및 진입도로 녹화	
	· IC 및 주요간선도로 변 진입부 상징공간 및 조형물 설치	
	· IC주변 상징수와 어울리는 조형물 설치	
주요시가화지역 내 거점 조성	· 읍면사무소 개방형 건축물 형성(담장허물기 및 단차 완화)	
	· 커뮤니티 외부공간 조성	
	· 주차장 녹화	
	· 단독주거지내 소규모 공원 및 식재 도입	
	· 도로 가각부 활용한 인지성 확보 및 교통섬 조성	

자가진단	3 : 우수	2 : 양호	1 : 보통	0 : 미흡	× : 해당사항없음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당진동 구시가지 경관중점관리구역 체크리스트

구분	키워드	주요내용	필수	권장	평가
민간	전면부	· 전면 도로변에서 3m 건축지정선 확보 – 건축선 이격으로 개방감 형성 및 보행활성화 도모	○		
	주민협정	·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주민협정지역으로 운영 – 주민협정시 건축외관, 높이, 포장, 간판 등을 협정	○		
	상징건축	· 구)당진군청사를 상징건축물로 디자인 – 상징가로에서 랜드마크 역할 수행 – 야간경관을 위한 조명 연출		○	
	녹화	· 평지붕 건축물인 경우 옥상녹화 권장		○	
	외관	· 건축물 외관은 주변 건축물과 조화롭게 디자인 – 이미지 설정, 형태, 재료, 색채 주민협정 가능 – 옥외광고물을 특화하는 주면협정 수립		○	
	높이	· 가로변 건축물 1층 높이를 통일감있게 형성 유도		○	
	이격공간	· 건축선 이격에 의한 공간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 – 재래시장의 유휴공간은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계획 – 휴게, 모임, 녹지, 홍보, 예술공간으로 활용		○	
	색채	· 구간별 테마를 설정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색채계획 – 주민협정시 구간별 색채 설정 및 사용색 등을 협정		○	
공공	광장	· 교통광장을 정비하여 상징적으로 조성		○	
	가로	· 보도폭 확장, 걷고 싶은 가로로 보행환경 조성		○	
		· 가로시설물 튀지않는 통합디자인 적용		○	
		· 야간거리 활성화를 위한 경관 조명		○	
		· 교차로에는 상징적인 포장 패턴 적용		○	
		· 가로수는 지역상징수를 권장		○	
		· 가로등에 배너를 설치하여 정보제공 및 가로 활기 부여		○	
		· 자투리공간을 테마형 녹지공간으로 조성		○	
	조형물	· 상업지역 재건축시 가로상단에 상징조형물 설치		○	

주) 필수는 장기적으로 가로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최소사항임

자가진단	3 : 우수	2 : 양호	1 : 보통	0 : 미흡	× : 해당사항없음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석문국가산업단지 경관중점관리구역 체크리스트

구분	키워드	주요내용	필수	권장	평가
민간	배치	· 공업시설은 도로변으로부터 10m이상 이격		○	
	개방감	· 건축물의 이격배치를 통해 개방감 확보 – 공업시설 10m이상, 기타는 5m이상 건축선 확보		○	
	통경축	· 십(十)자형으로 통경축 확보		○	
	입면	· 고층 공장건축물의 경우 고층·중층·저층의 구분된 입면 디자인 유도	○		
	전면부	· 단지내 상업시설은 저면 도로변에서 3m이상 건축지정선 확보 – 건축선 이격으로 개방감 형성 및 보행활성화		○	
	주민협정	· 상업지역내 주민협정지역으로 운영 – 주민협정시 건축외관, 높이, 포장, 간판 등을 협정		○	
	녹화	· 상업 및 주거지역내 평지붕 건축물인 경우 옥상녹화 권장		○	
	담장	· 도로변 전면부의 담장설치시 자연재료 활용 및 녹화		○	
	광고물	· 도로변 광고물 가급적 자제		○	
	색채	· 경관테마에 부합하도록 주변과 조화로운 색채 사용	○		
	외관	· 상업지역은 테마부여 및 주변건축물과 조화롭게 디자인 – 이미지 설정, 형태, 재료, 색채 주민협정 가능 – 옥외광고물을 특화하는 주면협정 수립		○	
공공	녹지대	· 공업건축물로의 완충녹지 및 차폐식재		○	
		· 간선 및 보조간선과 연계된 녹지띠 형성		○	
	광장	· 주요 간선교차로에는 광장을 조성하여 상징성 도모		○	
	보행로	· 단지와 서해안변을 연결하는 보행동선 체계 확보		○	
	조명	· 주요 거점부 및 서해안 조명부에 야간조명의 설치		○	
		· 서해안 조망시설 및 고층 건축물은 야간조명 설치		○	
	교량	· 교량 디자인 테마 적용		○	
	친수시설	· 친수테라스를 수변에 설치		○	
		· 수변 산책로와 연계하여 친수시설의 도입		○	
		· 당진시 경관 컨셉을 살린 친수시설 디자인		○	

주) 필수는 당진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색채와 관련된 디자인적 측면의 최소사항임

자가진단	3 : 우수	2 : 양호	1 : 보통	0 : 미흡	× : 해당사항없음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삽교호 관광지 경관중점관리구역 체크리스트

구분	키워드	주요내용	필수	권장	평가
민간	배치	· 전면 도로변에서 3m 건축지정선 확보 – 건축선 이격으로 개방감 형성 및 보행활성화 도모	○		
	주민협정	· 상업건축물 주민협정지역으로 운영 – 주민협정시 건축외관, 높이, 포장, 간판 등을 협정	○		
	입면	· 건축물 입면의 건축요소 및 색채 3개소로 제한	○		
	전면부	· 단지내 상업시설은 저면 도로변에서 3m이상 건축지정선 확보 – 건축선 이격으로 개방감 형성 및 보행활성화	○		
	외관	· 건축물 외관은 주변건축물과 조화롭게 디자인 – 이미지 설정, 형태, 재료, 색채 주민협정 가능 – 옥외광고물을 특화하는 주면협정 수립	○		
	녹화	· 상업 및 주거지역내 평지붕 건축물인 경우 옥상녹화 권장		○	
	색채	· 경관테마에 부합하도록 주변과 조화로운 색채 사용	○		
공공	광장	· 터미널 리모델링 및 복합건축물		○	
	보행로	· 보도폭 확장, 걷고 싶은 가로로 보행환경 조성		○	
	조명	· 주요 거점부 및 서해안 조명부에 야간조명의 설치		○	
		· 서해안 조망시설 및 고층 건축물은 야간조명 설치		○	
	주차장	· 친환경 주차장으로 개선		○	
	조형물	· 진입부에 상징조형물 설치			
	친수시설	· 친수테라스를 수변에 설치		○	
		· 수변 산책로와 연계하여 친수시설의 도입		○	
		· 당진시 경관 컨셉을 살린 친수시설 디자인		○	

주) 필수는 장기적으로 가로경관을 형성 및 색채·옥외광고물 관련 최소사항임

자가진단	3 : 우수	2 : 양호	1 : 보통	0 : 미흡	× : 해당사항없음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당진천변 경관중점관리구역 체크리스트

구분	키워드	주요내용	필수	권장	평가
민간	배치	· 신규 개발예정지는 하천에서의 개방성 확보를 위해 소차폐도의 배치 지양	○		
	개방감	· 건축물의 이격배치를 통해 개방감 확보 – 공동주택은 10m이상, 기타는 5m이상 건축선 확보 – 공동주택 수변에 저층 건축물, 외곽에 중고층 배치 유도	○		
	통경축	· 하천방향으로 통경축 확보	○		
	스카이라인	· 통일감있는 디자인 및 변화감 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 하천변 공동주택 블록은 층고변화 도모		○	
	지붕	·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가급적 경사지붕 유도		○	
	입면	· 고층건축물의 경우 고층·중층·저층의 구분된 입면 디자인 유도		○	
	담장	· 건축물 후면부의 담장설치시 자연재료 활용		○	
	정면성	· 가급적 하천방향으로의 정면성 확보		○	
	광고물	· 하천방향의 광고물은 가급적 자제		○	
	색채	· 경관테마에 부합하도록 주변과 조화로운 색채 사용 – 주민협정시 구간별 색채 설정 및 사용색 등을 협정		○	
	외관	· 당진천변 건축물 외관은 주변 건축물과 조화롭게 디자인 – 이미지 설정, 형태, 재료, 색채 주민협정 가능 – 옥외광고물을 특화하는 주면협정 수립		○	
공공	녹지대	· 당진천에 지역주민 여가 및 휴식을 위한 수변녹지 마련		○	
	보행로	· 당진천과 주변부를 연결하는 보행동선체계 확보		○	
	조명	· 당진천 주요 거점부에 야간조명의 설치		○	
		· 교량의 중간에 전망공간 설치 및 야간조명 설치		○	
	교량	· 기존 교량디자인 특화 및 신규 교량 디자인 테마 적용		○	
	친수시설	· 친수테라스를 수변, 사면, 제방등에 설치		○	
		· 수변 산책로와 연계하여 친수시설의 도입		○	
		· 당진시 경관 컨셉을 살린 친수시설 디자인		○	
		· 친수공간은 주민 이용행태에 따라 휴식형, 친수형으로 구분 설치		○	

주) 필수는 하천경관의 개방형 경관형성을 위한 최소 사항임

자가진단	3 : 우수	2 : 양호	1 : 보통	0 : 미흡	× : 해당사항없음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면천읍성 주변지역 경관중점관리구역 체크리스트

구분	키워드	주요내용	필수	권장	평가
민간	배치	· 가로의 연속성을 갖는 배치	○		
	스카이라인	· 거대한 규모 및 돌출건축물 지양역사자원의 조망을 보호	○		
	높이	· 문화재보호법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한 높이 제한		○	
	주민협정	· 상업건축물 주민협정지역으로 운영 – 주민협정시 건축외관, 높이, 포장, 간판 등을 협정	○		
	건축물	· 면천읍성과 면한지역은 전통한옥의 양식, 재료, 색채를 사용 권장		○	
	외부공간	· 부지내 녹지 최대한 보존		○	
		· 외부공간의 조경녹화, 옥상녹화, 벽면녹화로 녹시율 증대		○	
	외관	· 건축물 외관은 주변건축물과 조화롭게 디자인	○		
	입면	· 가로경관의 연속성을 고려하고, 주변 건축물과 조화롭도록 디자인		○	
	식재	· 역사자원과 조화될 수 있는 적합한 수종 선택		○	
	공작물	·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를 지양		○	
	재질	· 역사자원이 지닌 차분하고 정돈된 분위기와 조화되는 재질 사용 권장		○	
	색채	· 역사자원과 어울리고, 주변과 조화로운 색채 사용	○		
	옥외광고물	· 업소당 개수, 규격, 표시내용 최소화 및 권역별 차등화		○	
공공	광장	· 역사문화광장의 조성		○	
	보행로	· 도로 위계에 따른 차별적인 보도 포장		○	
	조명	· 면천읍성 등 주요 역사문화자원에 조명 설치	○		
	공공시설물	· 역사적 정체성과 조화성을 구현하기 위한 디자인 적용		○	
	상징조형물	· 면천IC를 비롯한 주요 진입부에 상징문 조성	○		
	친수시설	· 친수테라스를 수변에 설치		○	
		· 수변 산책로와 연계하여 친수시설의 도입		○	

주) 필수는 면천읍성 특정경관계획의 내용을 준용하여 최소사항임

자가진단	3 : 우수	2 : 양호	1 : 보통	0 : 미흡	× : 해당사항없음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당진시청사 가로변 경관중점관리구역 체크리스트

구분	키워드	주요내용	필수	권장	평가
민간	통경축	· 당진시청으로의 통경축 확보	○		
	옥외 광고물	· 터미널 주변 광고물의 형태, 색채를 지정하여 인지성 강화 – 주민협정시 업소당 개수, 규격, 표시내용 최소화	○		
	건축선	· 부지 경계선에서 5m이상 건축선 확보	○		
	이격 공간	· 건축선 이격공간에 식재 및 커뮤니티 공간 확보	○		
	담장	· 가로변 담장은 설치를 금하고, 식재 등으로 녹화	○		
	벽면	· 공동주택 측면에 그래픽 지양		○	
	재질	· 저층부 재질은 자연재료 사용 권장		○	
	상층부	· 원경에서 건축물을 쉽게 인지하도록 상층부 특화		○	
	조명	· 야간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입면 조명 특화		○	
	입면	· 통일감있는 입면 디자인		○	
	층고	· 건축물의 층고변화로 스카이라인 조절		○	
공공	가로수	· 가로수를 가능한한 2열로 식재하고, 하단에 관목 식재		○	
		· 지역상징수로 식재 권장		○	
	상징공간	· 양측 진입부에 상징공간, 상징시설 조성	○		
	중분대	· 중앙분리대에 식재를 통해 도심 녹시율 증대	○		
	녹지대	· 자투리 공간을 테마형 녹지공가능로 조성		○	
	시설물	· 가로시설물은 단순한 디자인으로 통합적으로 적용		○	

주) 필수는 장기적으로 상징가로를 형성하기 위한 최소사항임

자가진단	3 : 우수	2 : 양호	1 : 보통	0 : 미흡	× : 해당사항없음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단독주택 체크리스트(일반관리구역)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평가	비고
부지조성		· 가능한 자연형 사면구성, 옹벽 및 절토 발생의 최대한 억제		○		공통
		· 절토시 단면형상은 다단으로 나누어 처리하고 식재 피복		○		공통
		· 옹벽에는 위압감 저감위해 조경석 쌓기 및 경사면 녹화	○			공통
배치		· 경관의 연속성을 위한 가구별 건축선 일치		○		도시
		· 자연에 순응하는 형태로 배치		○		농어촌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을 갖도록 함		○		농어촌
		· 전면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최소 3m이상 이격하여 건축물 배치	○			공통
		· 가로경관 형성을 위해 도로에 면한 경우 전면성 유지	○			도시
		· 주택의 외부공간은 도로 등 공공공간과 연계하여 배치	○			도시
		· 인접부지의 공지 위치를 고려, 공지 활용도를 위해 집중되도록 배치	○			도시
		· 콘크리트 옹벽이 불가피할 경우, 넝쿨식물 등을 활용한 입면녹화나 전면식재대 조성을 통해 차폐	○			농어촌
건축물	지붕 및 옥상	· 주변 경관에 순응하는 형태의 지붕 설계(경사지붕 권장)	○			공통
		· 경관의 연속성을 위해 인접 건축물의 지붕형태와 유사성 유지	○			공통
		· 지붕의 지나친 장식 또는 형태의 차용 지양	○			공통
		· 평지붕의 경우 옥상 녹화나 정원 설계	○			도시
		· 경사지붕의 경우 지붕경사도는 4/10~8/10이 유지되도록 함	○			도시
		· 경사지붕의 경우 처마길이는 30cm이상 유지	○			도시
		· 지붕 및 옥상층에 설치되는 설비 및 부대시설 등은 가림막으로 차폐	○			도시
		· 수평선을 강조하고, 절제된 매스 형태로 계획	○			농어촌
		· 높이는 10m를 넘지않는 지상2층 이하를 권장	○			농어촌
		· 지붕은 도로방향으로 경사형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	○			농어촌
		· 물탱크는 지붕구조물 내에 차폐·설치한다. 이때 지붕의 형태 및 색상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차폐시설의 계획을 권장	○			농어촌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평가	비고
건축물	입면	·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입면 형성		○		공통
		· 단조로운 평면적인 입면 지양(적절한 분절로 입체감 형성)	○			도시
		· 건축물의 측·후면이 동일 또는 조화를 이루는 재료 사용	○			공통
		· 특정한 목적없이 단순한 모방 및 과도한 장식적 요소의 적용 지양		○		공통
		· 목재, 석재 등 자연재료 및 소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재료 사용		○		공통
		· 주 외장재, 부외장재, 포인트외장재의 3종류 내외로 사용	○			공통
		· 건축물 외벽의 녹화	○			공통
		· 가능한 설비 및 외부부착물이 전면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			공통
		· 전선은 한 곳에 모아서 일정규격의 덮개를 설치하여 정리	○			공통
외부공간		· 담장은 가급적 설치 지양, 설치시 1.2m이하의 투시형 및 자연소재	○			공통
		· 도로변 단독주택의 경우 생울타리나 담장을 설치하여 내부공간의 요소를 차폐한다. 단, 담장은 자연소재를 사용하거나 녹화함	○			농어촌
		· 주택부지내 외부주차장은 환경을 살린 투수성 포장	○			공통
		· 주차장은 외부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함	○			공통
		· 대문 및 담장의 위치와 형태가 이웃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공통
		· 건축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공간은 녹지 조성	○			공통

주) 비고란의 공통 : 도시, 농어촌 공통 적용, 도시 : 도시지역 적용, 농어촌 : 농어촌지역 적용

자가진단	3 : 우수	2 : 양호	1 : 보통	0 : 미흡	× : 해당사항없음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단독주택 체크리스트(특별관리구역)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평가	비고
이미지	· 첨단산업단지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설계 고려	○			산업단지
	·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건축물 설계 고려	○			공통
	· 관광지 및 대학촌으로서 특색있는 건축 설계	○			덕마리지구, 삽교호관광지, 난지도, 왜목, 도비도, 초락도, 안섬포구
배치	· 지형에 순응하는 건축물형태 및 배치(필요시 경관시뮬레이션 시행)		○		공통
	· 구릉지형에 맞는 테라스형, 타운하우스형 개발 유도	○			공통
	· 수변에서의 개방감을 고려한 건축물 형태 및 배치(필요시 경관시뮬레이션 시행)		○		당진천주변, 석문국가산단, 삽교호 관광지, 난지도, 왜목, 도비도, 초락도, 안섬포구, 한진리지구
높이	· 보전형 조망점에서 배후 산지를 고려한 건축물 스카이라인 형성		○		공통
지붕	· 단독주택단지로 개발되는 경우 아름다운 지붕 설계	○			공통
	· 경관의 연속성을 위해 인접 건축물의 지붕형태와 유사성 유지		○		공통
입면	·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입면 형성		○		공통
	· 단일건축물의 입면적은 위압감 방지를 위해 3,000㎡ 이하로 조성		○		공통
	· 목재, 석재 등 자연재료 및 소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재료 사용	○			공통

주) 비고란의 공통은 특별관리구역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

자가진단	3 : 우수	2 : 양호	1 : 보통	0 : 미흡	× : 해당사항없음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공동주택 체크리스트(일반관리구역)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평가
부지조성		· 가능한 자연형 사면구성, 옹벽 및 절·성토 발생의 최대한 억제		○	
		· 절토시 단면형상은 다단으로 나누어 처리하고 식재 피복		○	
		· 대지내 옹벽은 위압감 저감을 위해 조경석 쌓기 등 친환경적 설계		○	
		· 옹벽에는 담쟁이나 지피식물 등을 이용하여 경사면 녹화		○	
배치(통경축)		· 하천, 산지 등 주요 경관자원으로 조망 확보	○		
		· 집적을 통해 시각 회랑 확보		○	
		· 블럭별 폭 30m 이상의 통경축을 확보		○	
		· 조망자원 인접부는 입면적 최소화한 주거동 배치 (판상형 주거동의 평형 배치 지양)	○		
		· 경사지의 경우 경사를 활용한 건축물 배치(테라스형 등)	○		
		· ㅁ, ㄷ, H 자형 배치 지양	○		
		· 주변 환경과 무관하게 동일 주거동의 반복적인 배치 지양	○		
		· 보행녹도 및 바람길 확보		○	
		· 건축한계선 등을 이용한 가로의 개방감 확보(부지경계선에서 6m)		○	
		· 외부공간은 도로 및 공원 등 주변의 공공공간과 연계하여 배치	○		
스카이라인		· 층고의 변화로 리듬감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		
		· 세부적인 높이의 변화보다는 거시적인 단지 전체의 스카이라인 고려	○		
		· 주변과 조화된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한 건축물 높이(층수) 산정	○		
		· 하나의 단지가 7개동 이상일 경우 동일 층수가 30% 이내	○		
		· 중경 이상의 조망점을 기준으로 높이설정을 위한 경관시뮬레이션	○		
형태	주동형태	· 타워형, 복합형, 유선형 등 입지에 따라 다양한 형태 도입	○		
		· 탑상형 등 지형보존 및 시각통로에 유리한 주거동 적극적 활용	○		
		· 지표동 설정 및 시각적 디자인을 통한 초점 부여	○		
		· 주동길이 60m이내 계획		○	
	옥탑지붕	· 단지별 또는 가로별 특색있는 지붕 설계로 통일감 조성	○		
		· 입면부와 조화를 이루는 지붕형태로 계획	○		
		· 최상층 복층형, 개방형천장 등 옥탑부 높이를 시각적으로 완화	○		
		· 특정한 목적없이 과도한 장식적 요소의 적용 지양		○	
		· 평지붕인 경우 가급적 옥상녹화	○		
		· 옥탑의 물탱크 설치 지양(소방법상 필요한 경우 제외), 필요시 차폐	○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평가
형태	입면		·주거동에 의한 위압감 방지 위해 입면적 제한(1동 3,500㎡이하)	○		
			·개방감 확보를 위해 단지의 입면차폐도는 40m이하	○		
			·필로티 등의 도입을 통해 입면 분절, 돌출을 통한 입체적 계획	○		
			·1층필로티 설치시 유효높이 4.5m이상, 유효폭 10m이상 개방감 확보	○		
			·고층 주거동의 경우 저층, 중층, 고층 부위의 차별적 입면 구성	○		
			·저층부는 석재, 벽돌, 목재 등 자연재료를 사용	○		
			·담쟁이 등을 이용한 노출된 콘크리트 측벽의 벽면녹화	○		
			·주동의 출입구는 인지성과 입면의 다양성을 위해 디자인 특화	○		
조명			·조명은 탑상형 주동을 위주로 설치	○		
			·주거지역에 광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		
외부공간	경계	진입부	·과도한 연출을 금지하고 주변 시설물과 조화 고려	○		
			·단지의 주출입구에 야간 보행자를 위한 조명 설치	○		
			·진입부에 소규모 광장을 조성하여 장소성 제고	○		
			·보행자 및 노약자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조성	○		
		경계부	·담장은 가급적 설치 지양(설치시 투시형 및 자연소재)	○		
			·녹지, 보행로 등 공공공간에 접하는 경우 개방하여 연계	○		
			·방음벽 설치가 필요한 경우 가급적 마운드로 대체	○		
			·건축선 전면공지에 조깅 및 운동시설 설치 등 웰빙코스 조성	○		
	오픈스페이스		·놀이터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놀이시설 설치 및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	○		
			·광장에 벽천, 분수 등 수(水)요소를 활용한 변화감 있는 경관연출	○		
			·하천에 면한 경우 하천으로의 접근 보행로 확보	○		
	조경 및 식재		·보행로에는 화목류 또는 수형과 그늘이 좋은 교목 식재	○		
			·단지 내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30%이상	○		
	주차장		·지하화를 유도하고, 지상주차는 최소화하여 녹지공간 확보	○		
			·주차장은 근린블럭 또는 프로그램 주차장으로 계획	○		

주) 도시, 농어촌 공통 적용

자가진단	3 : 우수	2 : 양호	1 : 보통	0 : 미흡	× : 해당사항없음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공동주택 체크리스트(특별관리구역)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평가	비고
이미지	· 첨단산업단지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설계 고려	○			산업단지
	·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건축물 설계 고려	○			공통
	· 관광지 및 대학촌으로서 특색있는 건축 설계	○			덕마리지구, 삽교호관광지, 난지도, 왜목, 도비도, 초락도, 안섬포구
배치	· 공동주택개발시 주동길이는 50m 이하	○			공통
	· 구릉지형에 맞는 테라스형, 타운하우스형 개발 유도	○			공통
	· 수변에서의 개방감을 고려한 건축물 형태 및 배치 (필요시 경관시뮬레이션 시행)		○		당진천주변, 석문국가산단, 삽교호 관광지, 난지도, 왜목, 도비도, 초락도, 안섬포구, 한진리지구
	· 단지구획에 접하는 보행자도로에서 수변으로의 조망이나 접근을 위한 통경 확보시 필로티 설치	○			
높이	· 보전형 조망점에서 배후 산지를 고려한 건축물 스카이라인 형성		○		공통
지붕	· 경관의 연속성을 위해 인접 건축물의 지붕형태와 유사성 유지		○		공통
입면	·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입면 형성		○		공통
	· 목재, 석재 등 자연재료 및 소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재료 사용	○			공통
	·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입면 차폐도는 30m이하		○		공통
외부공간	· 조성외부공간을 배후 구릉지나 산지로의 연결 및 접근성 확보	○			공통
	· 지하주차장을 원칙으로 하고, 지상주차장시 다층 식재로 주도로 차폐	○			공통
	· 정비사업 또는 1,000㎡이상의 건축물 신축시 보행로와 연계된 선큰, 벤치등을 조성	○			공통
	· 주요 교차로 인접필지의 신축·재건축시 주진입부의 아케이드, 쌈지공원 조성	○			공통
야간경관	· 상징적 야경 연출을 위한 조명 연출	○			공통

주) 비고란의 공통은 특별관리구역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

자가진단	3 : 우수	2 : 양호	1 : 보통	0 : 미흡	× : 해당사항없음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상업·업무건축물 체크리스트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평가
배치		· 경관의 연속성을 위한 가구별 건축선 일치 (동일블럭내 건축선 지정)		○	
		· 건축물 외벽의 연속적 배치로 지역 전체의 통일된 이미지 유도		○	
		· 가로변 대형건물은 전면에 충분한 공개공지 확보		○	
스카이라인		· 도로변의 건축물은 주변 건축물과 스카이라인 고려	○		
형태	지붕 및 옥상	· 가로의 연속성을 위해 인접건축물의 지붕층 형태와 유사성 유지	○		
		· 평지붕에는 옥상녹화 및 조경 권장, 도로에서의 지붕디자인은 특화	○		
	입면	· 가로별 주변 건축물과 볼륨 및 입면 등이 조화되도록 계획(일관성)	○		
		· 건축물의 단조로운 입면 지양(적절한 분절로 입체감 형성)	○		
		· 저층부 아케이드 설치시 건축물 입면과 조화 고려	○		
		· 건축물의 측·후면이 동일 또는 조화를 이루는 재료 및 색채 사용		○	
		· 주 외장재, 부외장재, 포인트외장재의 3종류 이내로 사용(최소화)		○	
		· 특정한 목적없이 단순한 모방 및 과도한 장식적 요소의 적용 지양	○		
		· 교차로 및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전면으로 인식되도록 설계	○		
		· 중심지 상업몰의 경우 보행로의 시점부와 가각부 건축물 특화	○		
		· 1층부에는 보행자를 위한 전시공간 및 전시벽 설치	○		
		· 콘크리트 벽면이 전면 노출시 녹지요소 보강(노출콘크리트 제외)	○		
		· 가능한 설비 및 외부부착물이 전면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		
외부공간		· 확보된 공개공지에 소규모 공장 및 공원 등 휴게공간 조성	○		
		· 포장은 공공영역의 포장재료 및 패턴과 연계	○		

주) 도시, 농어촌 공통 적용

자가진단	3 : 우수	2 : 양호	1 : 보통	0 : 미흡	× : 해당사항없음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공업건축물 체크리스트(일반관리구역)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평가
부지조성		· 가능한 자연형 사면구성, 옹벽 및 절·성토 발생의 최대한 억제		○	
		· 절토시 단면형상은 다단으로 나누어 처리하고 식재 피복		○	
		· 대지내 옹벽은 위압감 저감을 위해 조경석 쌓기 등 친환경적 설계		○	
		· 옹벽에는 담쟁이나 지피식물 등을 이용하여 경사면 녹화	○		
배치		· 도로변 건축물은 주변 건축물의 전면위치 고려	○		
		· 설비시설, 기계실 등 부속실은 가급적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배치		○	
		· 부지경계선에서 6m 건축한계선을 지정	○		
		· 부지경계선에서 1m 이상의 담장한계선을 지정	○		
형태	지붕 및 옥상	· 평지붕인 경우 지붕에 옥상녹화	○		
		· 경사지붕인 경우 주변 건축물간의 지붕경사를 동일하게 디자인	○		
		· 태양열 등 친환경에너지 활용 유도	○		
	입면	· 대규모 박스형 건축을 지양하고 주변과 조화 유지	○		
		· 획일적이거나 단조로운 입면 지양(적절한 분절로 입체감 형성)	○		
		· 건축물의 길이가 25m이상인 경우에는 분절	○		
		· 공장 내부시설 및 설비시설 미관향상을 위한 디자인	○		
		· 외부에서의 미관을 고려하여 진출입부 디자인 처리	○		
		· 외장재는 친환경적인 재질 및 색채를 도입	○		
		· 건축물의 입면부와 측면부에 벽면녹화	○		
		· 외부공간에 적재물 등으로 인한 미관훼손 우려가 있는 부분은 차폐		○	
		· 홍보형의 과도한 장식 지양		○	
외부공간		· 진입부는 산업단지의 특성을 반영하되 절제된 형태의 시설물 설치	○		
		· 경계부는 완충 식재공간을 조성		○	
		· 인공담장 지양, 자연소재를 활용하여 친환경적 담장 조성	○		
		· 물탱크, 환기설비 등 미관저해 시설물은 가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차폐	○		

주) 도시, 농어촌 공통 적용

자가진단	3 : 우수	2 : 양호	1 : 보통	0 : 미흡	× : 해당사항없음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공업건축물 체크리스트(특별관리구역)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평가	비고
이미지	· 첨단산업단지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설계 고려	○			공통
배치	· 건축물의 이격배치를 통하여 개방감 확보(10m 이상)		○		공통
	· 부지경계선에서 6m 건축한계선을 지정	○			공통
	· 부지경계선에서 1m 이상의 담장한계선을 지정	○			공통
	· 수변에서의 개방감을 고려한 건축물 형태 및 배치(필요시 경관시뮬레이션 시행)		○		석문국가산단, 아산국가산단
높이	· 보전형 조망점에서 배후 산지를 고려한 건축물 스카이라인 형성		○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산일반산단, 합덕지방산단, 합덕 순성테크노폴리스단지, 합덕 인더스파크 일반산단
입면	· 대규모 박스형 건축을 지양하고 주변과 조화 유지	○			공통
	· 획일적이거나 단조로운 입면 지양(적절한 분절로 입체감 형성, 25m 이상의 경우)	○			공통
	· 고층 공장건축물의 경우 고층·중층·저층의 구분된 입면디자인 유도		○		공통
	· 외부공간에 적재물 등으로 인한 미관훼손 우려가 있는 부분은 차폐		○		공통
	· 홍보형의 과도한 장식 지양		○		공통
외부공간	· 진입부는 산업단지의 특성을 반영하되 절제된 형태의 시설물 설치	○			공통
	· 경계부는 완충 식재공간을 조성		○		공통
	· 인공담장 지양, 자연소재를 활용하여 친환경적 담장 조성	○			공통
	· 물탱크, 환기설비 등 미관저해 시설물은 가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차폐		○		공통
야간경관	· 진출입부, 단지 주요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벽면에 조명 설치	○			공통

주) 비고란의 공통은 특별관리구역 중 경관중점관리구역과 산업단지에 공통으로 적용

자가진단	3 : 우수	2 : 양호	1 : 보통	0 : 미흡	× : 해당사항없음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공공건축물 체크리스트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평가	비고
부지조성		· 가능한 자연형 사면구성, 옹벽 및 절·성토 발생의 최대한 억제		○		공통
		· 절토시 단면형상은 다단으로 나누어 처리하고 식재 피복		○		공통
		· 대지내 옹벽은 위압감 저감을 위해 조경석 쌓기 등 친환경적 설계		○		공통
		· 옹벽에는 담쟁이나 지피식물 등을 이용하여 경사면 녹화		○		공통
배치		· 부지경계선에서 건축선은 10m이상 이격	○			공통
		· 도로변 건축물은 주변 건축물의 전면위치 고려하여 주 출입구 설치	○			공통
높이 및 스카이라인		· 설비시설, 기계실 등 부속실은 가급적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배치		○		공통
		· 저층부는 가로 스케일을 반영하여 높이 설정	○			공통
		·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하는 높이 계획	○			공통
		· 수평성을 강조하고, 절제된 매스 형태로 계획한다	○			농어촌
		·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공공건축물의 형태, 외관, 스카이라인을 계획	○			농어촌
형태	지붕 및 옥상	· 지붕은 공공건축물로서 인지성이 높은 조형적 형태		○		공통
		· 평지붕인 경우 지붕에 옥상녹화	○			공통
		· 태양열 등 친환경에너지 활용 유도		○		공통
	입면	· 지나치게 권위적인 느낌의 건축물 디자인 지양		○		공통
		· 지역의 상징 건물로서 인지성 높은 디자인 권장	○			공통
		· 대규모 박스형 건축을 지양하고 주변과 조화 유지		○		공통
		· 획일적이거나 단조로운 입면 지양(적절한 분절로 입체감 형성)	○			공통
		· 불필요한 높은 계단, 거대한 캐노피 설치 지양		○		공통
		· 편안한 느낌을 주는 친환경적 외장재 사용	○			공통
		· 건축물의 입면부와 측면부에 벽면녹화	○			공통
		· 당해 기관을 지나치게 홍보하는 과도한 장식 지양		○		공통
		· 홍보게시판, 전광광고물 등은 건축물입면과 통합 설계	○			공통
		· 주변 건물과 조화되는 재료와 색채를 사용하되, 재료 자체의 색을 왜곡하거나 변형하는 색채 계획은 지양	○			농어촌
조명		·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조명시설 설치	○			공통
외부공간		· 진입부는 상징물, 안내시설 등으로 알기쉽고 친근하게 설계		○		공통
		· 주출입구 현관부는 장애자용 램프 및 캐노피 설치		○		공통
		· 외부공간은 주변 오픈스페이스(하천,공원 등)와 보행로 연계	○			공통
		· 대상지 내 정원을 조성하여 녹지공간을 확보	○			공통
		· 옥외 주차장은 잔디블럭 등의 투수성 포장		○		공통
		· 담장설치 지양. 부득이한 경우 자연소재 활용하여 친환경적으로 조성		○		공통
		· 물탱크, 환기설비 등 미관저해 시설물은 가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차폐		○		공통

주) 비고란의 공통 : 도시, 농어촌 공통 적용, 도시 : 도시지역 적용, 농어촌 : 농어촌지역 적용

자가진단	3 : 우수	2 : 양호	1 : 보통	0 : 미흡	× : 해당사항없음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공원녹지 체크리스트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평가
공원	기본원칙	· 어린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성 고려		○	
		· 장소의 특성을 살린 경관 연출		○	
		· 시선의 차폐로 우범화되지 않도록 조성		○	
		· 자연지형의 적극적으로 활용(경관의 깊이 공간감 유도)		○	
	배치	· 주변 공원, 학교 등 녹지거점간의 연계를 고려한 배치	○		
		· 노거수 등 지역 명소(명물)와 연계 조성	○		
		· 공원 조성 시 인접 보행가로 및 주요건축물과 동선 연계	○		
		· 교통약자를 배려한 주동선의 설계		○	
		·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휴게, 편의, 안내시설 배치	○		
	식재	· 수목 등을 활용한 자연형 캐노피 형성 (그늘, 공간감 부여)	○		
		· 대형목 또는 군식을 통한 시각적 초점 부여	○		
		· 화목류, 초화류 등 식재로 계절별 다양한 색채변화감 연출	○		
		· 공원내부 조망이 필요한 곳에는 관목 및 중교목 위주 식재	○		
		· 특색있는 수목의 집합식재 등을 통한 공간구분 및 흥미유발 공간계획	○		
	시설물	· 공원내 시설물은 통일감 있는 재료와 형태로 설계	○		
		· 공원내 충분한 휴게공간 조성(그늘막과 벤치는 함께 설치 권장)	○		
		· 진입부와 공원 내 주요 결절점에 공원시설 안내도 설치	○		
		· 어린이가 안전하면서 정서 함양과 감성을 자극하는 놀이시설 설치	○		
		·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용 도모 위한 공원내 운동시설 설치	○		
		· 동적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바닥분수 등 수경요소 도입	○		
		·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징조형물 설치		○	
		· 야간 활용도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친환경 조명 설치		○	
		· 공원시설물은 원색계열 및 자극적 색채의 남용 금지		○	
	포장	· 주변과 조화되는 경관을 유도하는 패턴 및 재료 사용		○	
		· 과장된 패턴이나 상징성을 강조하는 패턴의 남용 주의		○	
		· 친환경 투수성 포장재와 자연 재료 사용		○	
		· 공원 내 주차장은 주차장 면적의 20%이상 녹화	○		
	경계부	· 보행 가로와의 경계부에는 녹지와 휴게시설의 설치	○		
		· 담장설치 지양.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등 개방적으로 조성		○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평가
녹지	공통사항	· 식생의 폭을 확보하여 훼손구간을 완화	○		
		· 식생구조는 다층구조로 안정된 식생층 형성	○		
		· 다양한 생태환경을 위한 풍부한 수종 식재	○		
		· 자생수종을 고려하여 보완적 성격의 식재를 실시	○		
		· 지역이미지 강화를 위한 지역수종 고려		○	
		· 가로수와 연계하여 자연스러운 녹지경관 흐름 유도		○	
	완충녹지	· I.C 주변에 차량충돌을 저감시키기 위해 완충식재 조성	○		
		· 공업지역 및 대로변은 내연성이 강한 수목을 활용한 다층차폐식재		○	
		·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연접부분은 최소 10m이상 폭원의 마운딩 처리된 녹지 설치[1)]		○	
		·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의 연접부분은 최소 15m이상 폭원의 녹지 설치	○		
	연결녹지	· 도시의 녹지를 연결하여 도심과 자연의 공생을 도모		○	
		· 하천변 연결녹지는 수변과 연계된 수종 선정		○	
		· 시가지내 가로수를 활용하여 순환형 연결녹지 조성		○	
	경관녹지	· 가로에는 일관적인 이미지 연출을 위한 동일수종을 식재		○	
		· 다양한 수목 군식을 통한 녹지 특화	○		
		· 차량 운전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녹지 조성		○	
		· 상업지역 가로변은 밀식으로 인한 차폐 지양(상업지역 경관 고려)	○		

주) 도시, 농어촌 공통 적용

자가진단	3 : 우수	2 : 양호	1 : 보통	0 : 미흡	× : 해당사항없음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녹지 설치 및 규모),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제1장 제9절(용도지역간 완충공간 설정)참조
- 경관녹지의 경우, 최소 폭원 10m 규정에 대하여 예외로 하며, 지역특성 및 입지 여건을 고려하여 녹지 또는 공공공지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녹지의 설치 또는 대체 시설 설치 여부를 결정

수변경관 체크리스트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평가
공통사항	· 교통약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리성 도모		○	
	· 접근로, 편의시설 등 인공시설 설치 시 자연소재 활용		○	
	· 주요동선 결절부에 조망데크 등 수변조망 공간 조성	○		
	· 인공시설이 필요한 경우, 환경성 고려하여 가급적 설치 최소화	○		
	· 하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한 건축물 배치(평형배치 지양)	○		
	· 주변 스카이라인과 조화되는 경사형 지붕 설치	○		
	· 식생이 부족하거나 없는 구간에 자생수종을 보완하여 생태경관 연출	○		
	· 접근로는 적절한 조도 유지 및 통합 안내체계 제공		○	
	· 가급적 조명 설치 지양, 부득이한 경우 수변생태를 고려하여 설치	○		
	· 조망이 양호한 지점에 데크 설치	○		
해안	· 해안경관조망이 양호한 곳에 조망데크 설치		○	
	· 수변 활동공간과 주변 문화 및 상업거점 시설과의 보행동선 연계	○		
	· 상업건축물의 옥외광고물 정비		○	
하천	· 하천의 형태는 원형을 그대로 최대한 유지		○	
	· 자연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며, 훼손된 공간 복원		○	
	· 제방은 콘크리트 벽면 등 인공제방 지양. 생태형 호안처리		○	
	· 인공제방의 경우 수목 등 식재를 통해 인공경관 저감	○		
	· 하천 이용자가 많은 구간에 징검다리 설치로 접근성 증대	○		
	· 교량 하부공간을 활용하여 휴식 및 문화공간 조성	○		
	· 하천변 위해경관 차폐 및 부분적 개방으로 변화감 부여	○		
	· 상습침수구간에는 친수생태공간으로 조성하고 시설설치 최소화	○		

주) 도시, 농어촌 공통 적용

자가진단	3 : 우수	2 : 양호	1 : 보통	0 : 미흡	× : 해당사항없음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도로경관 체크리스트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평가
공통		· 노면의 요철을 최소화하고 도로의 평탄도 유지	○		
		· 군집 및 다층 식재를 통하여 가로경관의 다양화 유도	○		
		· 계절테마를 도입한 가로수 식재		○	
		· 교통관련 안내판 및 가로시설물은 가급적 통합적 설치	○		
도로	자동차 도로	· 교차로 가각부에 시선을 차단하는 시설물 설치 제한[2]		○	
		· 중앙분리대를 활용한 녹지대 조성	○		
		· 교통섬 및 교차점 광장에는 가능한 녹지 조성	○		
	보행자 도로	· 보행구간은 걷기 편안하도록 평탄하게 조성	○		
		· 건축물 등에 대한 조망을 방해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가로수 식재	○		
		·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설치 기준에 따름[3]		○	
		· 보행도로와 횡단보도의 단차 최소화	○		
		· 가로별 일관성 있는 보도 패턴과 색채 적용(원색계열 색상 최소화)	○		
		· 버스, 택시 등 이용객의 승하차 및 접근 인지 방해시설물 설치 제한[4]		○	
	자전거 도로	· 대중교통 및 주요지점 등 다중이용자시설 주변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	○		
		· 자전거도로상에 안전을 위해 시설물 설치 지양	○		
		· 자전거 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수종 선택 및 식재	○		
		· 자전거도로 경계선 및 노면표지를 명확히 표시	○		

주) 도시, 농어촌 공통 적용

자가진단	3 : 우수	2 : 양호	1 : 보통	0 : 미흡	× : 해당사항없음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2)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3)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횡단보도)
4) 도로교통법 제32조에 근거한 계획 기준

옥외광고물 체크리스트(일반관리구역)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평가
공통사항	수량	· 업소당 광고물의 총수량은 2개 이내(가각부 3개 이내)		○	
	표시방법	· 판류형 간판은 지양하고 입체형 간판 설치		○	
		· 한 건물 안에서의 조화성을 고려 가급적 동일 또는 유사한 서체 사용		○	
		· 가급적 단순, 명확한 내용 표기		○	
		· 업소별 특성화한 로고, 엠블럼, 픽토그램 등 활용		○	
		· 문자의 크기는 세로 0.7m이내로 설치		○	
		· 문자는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함(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 병기)		○	
	재료	· 동일 건축물내 광고물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재료 사용	○		
		· 건물외장재를 고려하여 건물이미지와 조화되는 재료 사용		○	
		· 유지관리가 양호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 사용	○		
	조명	· 에너지 고효율 조명 사용 권장	○		
		· 광고물의 휘도를 낮게 하여 눈부심을 최소화		○	
		· 네온 및 점멸방식 조명 설치 지양	○		
		· 광원의 직접 노출 , 간접조명 방식 및 외부조명방식 권장	○		
	색채	· 돌출색 및 원색의 사용을 지양, 입면색채와 조화	○		
		· 채도 4이상, 명도 6이하인 색의 바탕면 사용규제	○		
		· 형광색 사용금지	○		
	기타	· 옥상간판,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애드벌룬 사용 금지 (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은 예외)	○		
가로형간판	수량	· 가로형간판은 업소당 1개 이내(가각부 2개 이내)		○	
		· 업소가 표시할 경우 설치 가능한 광고물의 총수량에 포함됨	○		
	크기	가로 · 해당 건축물의 가로폭 이내(최대 10m 이내)		○	
		세로 · 세로 0.7m 이내		○	
	표시방법	· 동일 건물, 동일 층에서는 간판의 설치높이 통일		○	
		· 3층 이하 설치		○	
		· 건물입면에서 간판의 돌출폭은 30cm이내	○		
건물상단 가로형간판	수량	· 4층 이상 건축물에 1개 설치 가능		○	
		· 업소가 표시할 경우 설치 가능한 광고물의 총수량에 포함됨	○		
	크기	· 건물 가로크기의 1/2이하	○		
	표시방법	· 건축물 최상층의 정면에 입체형으로 건축물명 또는 대표업소명 표시	○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평가
연립형 간판	수량	· 각 업소의 개성보다는 전체적인 조화가 우선이 되도록 디자인		○	
		· 업소가 표시할 경우 설치 가능한 광고물의 총수량에 포함됨	○		
	크기	· 연립되는 가로형간판 1개의 면적최대 1㎡이내	○		
		· 게시 틀의 총면적은 최대 8㎡이내	○		
		· 간판의 두께는 벽면으로부터 20cm이내		○	
	표시 방법	· 정면 5층 이하 별도공간에 가로형으로 연립하여 설치	○		
		· 벽면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곳이나 곡각지점에 표시	○		
돌출형 간판	수량	· 돌출형 간판은 업소당 1개 이내		○	
		· 업소가 표시할 경우 설치 가능한 광고물의 총수량에 포함됨		○	
	크기	가로 · 광고물의 가로크기 0.8m이내		○	
		세로 · 건축물의 1개층 높이 이내로 설치		○	
	표시 방법	· 건물의 5층 이하에 설치	○		
		· 건물의 좌우 모서리 중 한쪽에 일렬로 정렬하여 설치 (건물의 전면폭이 10m초과하는 경우, 건물 양측단에 표시 가능)		○	
		· 2개 이상 설치시 광고물의 돌출폭 일치	○		
		· 지면으로부터 3m이상 이격하여 설치(인도 없을 경우 4m 이상)		○	
지주 이용 간판	수량	· 1개 업소에서 1개의 간판 설치		○	
		· 업소가 표시할 경우 설치 가능한 광고물의 총수량에 포함됨		○	
	크기	· 1면의 최대면적 2㎡이내, 세로크기는 최대 3m 이내로 설치	○		
	표시 방법	· 부지내 입주 업소수를 배분하여 종합안내판 형식으로 설치 권장	○		
		· 당해 건물의 부지안에 설치, 사유지경계로부터 1m이상 안쪽에 설치	○		
		· 보행자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	

주) 도시, 농어촌 공통 적용

자가진단	3 : 우수	2 : 양호	1 : 보통	0 : 미흡	× : 해당사항없음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옥외광고물 체크리스트(특별관리구역)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평가	비고
공통사항	디자인	· 지역 또는 거리의 특성을 반영하여 테마를 설정		○		공통
		· 업소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로고, 엠블럼, 픽토그램등을 권장	○			공통
	표시방법	· 업소당 광고물의 총수량은 2개 이내(건축물 최상단의 건물명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과 연립형 지주이용간판은 간판 총수량에서 제외)		○		공통
		· 광고내용은 광고물 표시면적 중 각 면의 20% 이내		○		공통
		· 판류형 간판은 지양하고 입체형 간판 설치		○		공통
	재료	· 동일 건축물내 광고물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재료 사용		○		공통
		· 플렉스 등 유연성 원단 사용 및 고광택 금속재질의 노출 지양	○			공통
	조명	· 부드러운 간접조명 방식 및 외부조명방식 권장	○			공통
		· 내부조명방식의 경우 문자나 도형의 부분조명방식 권장	○			공통
		· 네온, 점멸방식 및 광원 노출 제한		○		공통
	색채	· 검정색과 빨강색은 간판 전체의 50%이상 금지		○		공통
가로형간판	수량	· 1업소당 1개 이내(가각부 2개 이내)		○		공통
	크기	가로 · 해당 건축물의 가로폭 이내(최대 10m 이내)		○		공통
		세로 · 세로 0.7m 이내		○		공통
		4층이상 · 글자크기는 0.9m이내		○		공통
	표시방법	· 판류형 판의 설치 금지하고 입체형으로 설치		○		공통
		· 3층이하 정면에 입체형으로 설치하며, 건축 측면 또는 후면의 설치 금지		○		공통
		· 4층이상에는 건물명이나 상징도형에 한하여 건물 상단 중 3면에 입체형으로 된 간판 각각 부착 가능		○		공통
세로형간판	표시방법	· 세로형 간판의 설치를 금지		○		공통
연립형간판	수량	· 정면 5층이하 별도 공간에 가로형 간판 설치		○		공통
	크기	· 연립되는 가로형간판 1개의 면적최대 1㎡이내		○		공통
		· 게시 틀의 총면적은 최대 8㎡이내		○		공통
		· 간판의 두께는 벽면으로부터 20cm이내		○		공통
돌출형간판	수량	· 1업소 1개만 표시		○		공통
	크기	가로 · 광고물의 가로크기 0.8m이내		○		공통
		세로 · 건축물의 1개층 높이 이내로 설치		○		공통
	표시방법	·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0.8m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세로의 길이는 1.5m이내, 간판두께는 0.5m이내		○		공통
		· 건물 전면폭이 10m이하인 경우 1줄로, 10m를 초과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양측 끝에 각각 1줄로 설치 가능		○		공통
		· 지면으로부터 4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며, 상단은 건물의 벽면높이를 초과해서는 안됨		○		공통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평가	비고
지주 이용 간판	수량	· 5층이상 건물에 5개업소이상의 업소에 한해 연립형으로 설치	○			공통
	크기	· 차도 또는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고, 보행인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아야 함	○			공통
	표시 방법	· 지면으로부터 상단까지 4m이내, 가로폭은 1m 이내로 함		○		공통
		· 부지내 입주 업소수를 배분하여 종합안내판 형식으로 설치 권장	○			공통
		· 당해 건물의 부지안에 설치, 사유지경계로부터 1m이상 안쪽에 설치	○			공통
		· 보행자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		공통
옥상 간판	설치	· 옥상간판 설치 금지		○		공통
		· 4층이상 건물로 업소명을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한하여 설치[5]		○		공통
	표시 방법	· 건물옥상바닥의 안쪽에 표시		○		공통
		· 구조물의 높이는 3m이내, 가로길이는 10m 이내로 설치		○		공통
		· 글자높이는 2m 이내		○		공통
현수막	설치	· 현수막 설치를 금지		○		공통
		·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여 표시	○			공통
창문 이용 광고물	설치	· 창문이용 광고물 금지		○		공통
		· 1층 업소에 한해 창문 또는 출입문에 폭 0.2m이내의 띠형태로 상호, 브랜드, 전화번호를 표시 가능	○			공통
애드 벌룬	설치	· 애드벌룬 설치 금지		○		공통
전기 이용 광고물	네온류 전광류	· 상업지역에 한하여 설치		○		공통
		· 입체형 문자·도형에 전광류(LED조명 등)를 삽입하여 광원을 직접적으로 표출하지 아니하는 간접조명 형태의 광고물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시설보호지구를 제외한 지역에 설치 가능	○			공통

주) 비고란의 공통은 특별관리구역 중 경관중점관리구역, 관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단지 중 상업지역에 공통으로 적용

자가진단	3 : 우수	2 : 양호	1 : 보통	0 : 미흡	× : 해당사항없음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5)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2. 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공공시설물 체크리스트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평가
도시 구조물		교량	· 구조적 합리성을 갖지 못한 장식적 요소 제한	○		
			· 교각은 일체화하고, 슈퍼그래픽 사용 지양		○	
			· 구조물을 압도하지 않는 간결한 구조와 형태로 디자인	○		
		육교	· 사용자에게 친근감을 주는 색채 사용		○	
			· 문자나 슈퍼그래픽, 장식의 남용 지양	○		
			· 기능과 무관한 장식적 조명 사용을 지양		○	
		옹벽	· 옹벽 높이는 위압감을 주지 않도록 다단 처리		○	
			· 재료는 석재나 보강토 쌓기 등 친환경 옹벽 권장	○		
			· 벽면 녹화 등 자연재료를 이용한 마감처리	○		
			· 콘크리트 옹벽에 슈퍼 그래픽 적용 지양(간결한 패턴 사용)	○		
			· 배수구는 유출수의 흔적이 옹벽에 누적되지 않도록 내림각으로 설치	○		
		방음벽	· 조망·일조·채광 등을 고려하여 투명한 재료 사용(개방감 확보)	○		
			· 획일화된 재료 및 색채의 사용을 지양(불필요한 혼용 지양)		○	
			· 식재 및 녹화를 적극 권장	○		
			· 높이차가 발생하는 경우 사선 처리로 시각적 피로감 경감	○		
		포장	·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나친 경사는 지양	○		
			· 자연친화적 재료 및 시공법 사용	○		
			· 주차장 포장은 투수포장재 사용 권장	○		
가로시설물	휴게시설물	벤치	· 인체를 고려한 폭, 높이 등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함	○		
			· 신체와 접하는 부분은 라운딩 처리로 상해를 예방함	○		
			· 조립부의 볼트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디자인	○		
			· 최소한의 색채와 재료 자체의 색을 사용(유색페인트 도장 지양)		○	
			· 테마공원이나 특화된 거리의 경우 개성있는 디자인함	○		
			· 배치장소에 따라 등받이 유무를 구분하여 설치	○		
		파고라	· 파고라는 간결한 형태로 주변으로부터 개방감 확보	○		
			· 최소한의 색채와 재료 자체의 색을 사용(유색페인트 도장 지양)	○		
			· 파고라의 구조물 주변에는 식재 및 녹화 권장	○		
			· 조명(가로등) 및 벤치와 인접하여 설치	○		
	위생시설물	휴지통	· 수거 및 청소 등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기능적 측면 고려	○		
			· 쓰레기의 투입구는 위쪽으로 개방되지 않도록 함	○		
			· 원색계열 및 고광택의 색채 사용 지양		○	
			· 꼭 필요한 곳 이외에는 설치 지양	○		
		공중화장실	· 장애자 노약자 등을 고려하여 출입구의 턱을 없애고 폭을 확보함	○		
			·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장식남용 금지)	○		
			· 통풍이 잘되도록 설계	○		
			· 주변환경을 고려한 조화로운 색채 적용		○	
		음수대	·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장식남용 금지)		○	
			· 휠체어 이용자가 사용할수 있도록 배려한 디자인		○	
			· 청결, 배수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	○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평가
가로시설물	서비스시설물	자전거 보관대	· 자전거의 보관·회수시 시설물 손상을 막도록 내구성 있는 재료 사용	○		
			· 기능면에서 불필요한 형태는 지양	○		
			· 볼라드 등 다른시설물의 기능을 겸할 수 있도록 설치	○		
			· 자전거도로에 인접한 길가 또는 주요지점의 공지에 설치	○		
		관광 안내소	· 관광지의 특성을 반영한 형태 디자인		○	
			· 과도한 CI, 조명 및 원색의 색채 지양	○		
			·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시설물과의 결합하여 설치	○		
			· 장애인 및 노약자의 사용을 고려하여 설계		○	
	통행시설물	승강장	· 운전자와 승객이 위치 파악이 용이하도록 단순하고 간결하게 디자인		○	
			· 승차대 벽면에 투명재료를 사용하여 개방감을 확보	○		
			· 광고물 부착판이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일체화하여 디자인[6]	○		
			· 편의시설 등과 통합하여 설치	○		
			· 고채도 및 고명도의 색 사용 지양		○	
			· 도시전체에 일관된 기준의 적용으로 통일감 확보	○		
			· 가로등 및 가로수 사이에 그룹으로 배치(보행로 점유면적 최소화)	○		
		보도 블록	· 표면의 페인트 도장 금지		○	
			· 자극적인 고채도 색채 및 과도한 패턴 사용 지양		○	
			· 요철이 심한 보도블록 사용 지양	○		
			· 블록간 경계의 단차가 없도록 설치	○		
가로시설물	녹지시설물	가로 화분대	· 자연물을 모방한 형상, 과장된 패턴이나 문자의 남용은 지양	○		
			· 플라스틱 등 인공재료 지양, 자연친화적 재료 사용	○		
			· 목재사용시 유색 페인트 도장 지양, 방수·방부·방축 검토		○	
		가로수	· 식생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식재	○		
			· 보행을 방해하지 않는 가로수 식재 위치 설정	○		
			· 보호덮개는 보도면의 높이와 일치하도록 설치		○	
			· 보호덮개는 유지관리 및 청소가 용이하도록 디자인	○		
			· 가로수 지주대 필요시 보호덮개와 통일성 있도록 디자인	○		
	보호시설물	볼라드	· 볼라드 사이공간 1.5m의 공간을 확보(휠체어 통과 가능)	○		
			· 보행인이 접촉하기 쉬운 모서리 부분은 부드럽게 처리	○		
			·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점자블록과 충분한 간격으로 설치	○		
			· 차량 파손 및 안전에 위험한 석재재료의 사용 지양	○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평가
가로시설물	보호시설물	보호펜스	· 장식적인 패턴을 지양하고 단순하고 간결하게 디자인		○	
			· 고광택 재료 사용 지양	○		
			· 보도와 녹지 경계펜스는 자연친화적인 재료 사용	○		
			· 보도와 차도 경계펜스는 차량충돌에 대비하여 튼튼한 재료 사용	○		
	관리시설물	맨홀	· 보도블록의 색채 패턴과 동일하게 처리하여 일체감 형성	○		
			· 표면의 페인트 도장 금지		○	
			· 보도면과 연속성 있는 형태 디자인	○		
		분전반, 배전반	· 색채 도안이나 슈퍼그래픽 등 기능과 무관한 장식 적용 지양	○		
			·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	○		
			· 크기의 최소화	○		
			·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특수도료 사용 등)		○	
	조명시설물		· 지나친 형태변화 및 장식적인 요소 지양(간결한 형태 권장)	○		
			· 지주 정착시 지지대, 볼트, 앵커 등 노출 되지 않도록 디자인	○		
			· 고광택의 재료와 고채도 또는 원색의 색채사용 지양	○		

주) 도시, 농어촌 공통 적용

자가진단	3 : 우수	2 : 양호	1 : 보통	0 : 미흡	× : 해당사항없음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6) 도로교통법 제32조

주택 색채 체크리스트(일반관리구역)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평가
공동주택	기본원칙		• 주위건물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상징성이 느껴지도록 계획		○	
			• 원경에서 단지별 통일된 이미지를 연출		○	
	사용색 수		• 사용색은 단색이나 2~3가지내에서 적용		○	
	주조색	범위	• 주조색: 색상 Y20R~Y50R, N / 흑색량 10~20 / 순색량 2~5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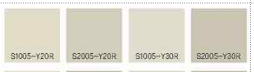		○	
		면적	• 70% 이상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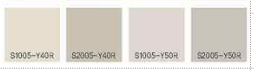		○	
	보조색	범위	• 색상 Y10R~Y90R, N / 흑색량 10~40 / 순색량 2~20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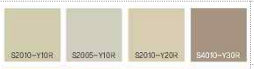		○	
		면적	• 30% 이내 예시		○	
	강조색	범위	• 색상 Y~R10B, N / 흑색량 20~60 / 순색량 10~40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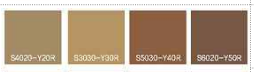		○	
		면적	• 5% 이내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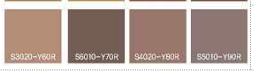		○	
	소재색		• 소재색은 최대한 제시한 색상범위에서 유사한 색을 사용	○		
	그래픽		• 슈퍼그래픽등에 과도한 그래픽 사용 금지		○	
	판상형		• 15층 이상 판상형은 상층, 중층, 저층부로 구분하여 계획		○	
	탑상형		• 탑상형은 저층, 그 이상의 층으로 구분하여 계획 가능	○		
	연립주택		• 연립주택은 단색으로 계획 가능	○		
	상층부		• 상층으로 갈수록 고명도 색채의 사용	○		
	저층부		• 저층부는 보행자를 고려하여 중저채도의 차분한 색채 사용	○		
			• 단부마감재료수는 많지않게 하며 2개이상시 색상차가 크지 않게 적용	○		
	지붕		• 지붕색은 갈색계열이나 회색계열을 사용하여 통일성을 유지	○		
	설비,몰딩		• 입면색과 동일하거나 유사계열의 돌출되지 않는 색을 사용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은 상품, 광고물을 고려하여 돌출되지 않는 색을 사용	○		
	창틀,난간		• 입면색과 유사계열로 명도만 조절하여 강조되지않게 사용	○		
	부대시설		• 옥상설비와 바닥은 채도20 이하의 저채도색 사용	○		
	담장,옹벽		• 주변건축물보다 채도를 낮게 사용하고 자연친화적 재료사용	○		
	펜스		• 펜스는 가로시설물 색채설계지침을 준수, 순색량 15이하색 사용	○		
	측벽		• 형태를 고려하여 단순한 패턴과 중·저채도의 색을 적용	○		
			• 마을명, 동호수, 건설사 로고 등의 색채는 외장색채와 유사조화	○		
			• 건설사 로고는 10개 동 이하에서는 1개 이내, 20개동 이하에서는 3개 이내, 20개 동이하에서는 4개 이하로 사용	○		
			• 9층이하의 낮은 건물은 상층부 동번호 표기 제외 가능	○		
			• 마을명, 동번호의 크기 및 위치는 측벽 그래픽 표기법 준수	○		
			• 측벽의 슈퍼그래픽은 금함(단,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가능)		○	
	보도포장		• 보도포장은 단순한 패턴으로 저채도의 유사계열로 계획	○		
	출입구		• 동출입구는 고채도의 강조색 사용을 금지	○		
			• 건축물과 채도와 명도를 비슷하게 연출	○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평가
단독주택	기본원칙		• 주변경관과 조화로우며, 근접한 건물과 연속성 유지		○	
	주조색	범위	• 색상 Y~Y70R, N /흑색량 10~30 / 순색량 2~20		○	
		면적	• 70% 이상			
	보조색	범위	• 색상 Y~R, N /흑색량 10~40 / 순색량 2~30		○	
		면적	• 20~30%			
	강조색	범위	• 색상 Y~R, N /흑색량 20~70 / 순색량 2~40		○	
		면적	• 5% 이내			
	유사색		• 2가지 이상의 색 사용시 유사색상범위내에서 사용	○		
	그래픽		• 담장등에 과도한 그래픽 사용 금지		○	
	소재색		• 소재색은 최대한 제시한 색상범위에서 유사한 색 사용	○		
	지붕		• 갈색계열이나 회색계열을 사용하여 통일성을 유지	○		
	옥상		• 옥상설비와 바닥은 채도20 이하의 저채도색 사용	○		
	담장,옹벽		• 주변건축물보다 채도를 낮게 사용하고 자연친화적 재료를 사용	○		
	창틀,문		• 입면색과 유사계열로 명도만 조절하여 강조되지 않게 사용	○		
	점포형 주거		• 점포층과 주거층이 구분되도록 색을 적용	○		
	우편함		• 고채도 사용을 금하며 건축물과 비슷한 색으로 채도를 낮게 사용	○		
	캐노피		• 대문 및 출입문과 동일하거나 유사색으로 계획	○		
	대문 및 출입문		• 건축물색과 유사계열에서 강조하여 주목성을 높임	○		
	채도기준		• 교통·안전표시 또는 사인보다 낮은 채도의 색을 사용	○		
	펜스		• 순색량 15 이하의 저채도색으로 나뭇잎보다 돌출되지 않도록 함	○		

예시

주) 도시, 농어촌 공통 적용

자가진단	3 : 우수	2 : 양호	1 : 보통	0 : 미흡	× : 해당사항없음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상업건축물 색채 체크리스트(일반관리구역)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평가
기본원칙		· 다양한 개성이 느껴지며, 주위 건물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단순하며 세련되고 활기찬 느낌으로 연출			○	
주조색	범위	· 색상 G80Y~Y40R, R80B~B / 흑색량 5~20/ 순색량 2~10	예시		○	
	면적	· 60% 이상				
보조색	범위	· 색상 Y~R, R80B~G90Y / 흑색량 10~50 / 순색량 10~30	예시		○	
	면적	· 30% 내외				
강조색	범위	· 색상 Y~R, R80B~G90Y / 흑색량 20~70 / 순색량 2~40	예시		○	
	면적	· 10% 이내				
연속성		· 근접한 대상물에는 동일한색이나 유사색을 적용		○		
유사색		· 2가지 이상의 색 사용시 유사색상범위내에서 사용		○		
그래픽		· 건축입면등에 과도한 그래픽 사용을 금지			○	
소재색		· 소재색은 최대한 제시한 색상범위에서 유사한 색을 사용		○		
지붕색		· 지붕색은 갈색계열이나 회색계열을 사용하여 통일성 유지		○		
창틀,난간		· 입면색과 유사계열로 명도만 조절하여 강조되지 않게 사용		○		
옥상		· 옥상설비와 바닥은 채도20이하의 저채도 색을 사용		○		
차양막		· 차양막은 중채도 이하의 색을 사용하고 동일건물은 동일한색으로 통일감을 유지		○		
전면공간		· 전면공간은 건축 및 주변포장과 연계성을 도모하여 돌출되지 않도록 함		○		
연결구조물		· 연결구조물은 건물입면과 유사한 색을 적용		○		
재료사용수		· 재료와 색채 사용수를 제한하여 복잡하지 않게 연출		○		
외벽		· 노출된 건물 외벽은 모든면의 마감수준을 유사하게 사용		○		
유리		· 유리가 건물의 70%이상이면서 고채도 착색유리가 아닐 경우 사용색 범위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됨		○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색채 설계지침에 준하여 적용			○	

주) 도시, 농어촌 공통 적용

자가진단	3 : 우수	2 : 양호	1 : 보통	0 : 미흡	× : 해당사항없음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공업건축물 색채 체크리스트(일반관리구역)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평가
기본원칙		· 건축물의 기능성이 부각되며, 연속성과 상징성이 반영된 차분하고 안정된 이미지로 연출			○	
주조색	범위	· 색상 Y~Y40R, R80B~B / 흑색량 5~20 / 순색량 2~10	예시		○	
	면적	· 70% 이상				
보조색	범위	· 색상 Y~R30B, R80B~G90Y / 흑색량 10~50 / 순색량 2~20	예시	○		
	면적	· 30% 이내				
강조색	범위	· 색상 Y10R~R, R90B~G90Y / 흑색량 20~70 / 순색량 2~40	예시	○		
	면적	· 5% 이내				
사용색수		·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2~3가지의 이내 색채로 계획			○	
강조색수		· 강조색을 적용할 경우 2가지 이내의 색으로 제한			○	
시설집적		· 시설이 집적된 장소 또는 산업단지는 사업소간의 통일감 있는 색채계획			○	
거대시설		· 규모와 높이가 거대한 시설은 고명도의 위압감을 해고하는 색채 사용			○	
연속성		· 근접한 대상물에는 동일한 색이나 유사색을 적용하여 연속성을 유지		○		
유사색		· 2가지 이상의 색 사용시 유사색상 범위 내에서 사용		○		
고채도 강조		· 부분적으로 고채도의 강조색 사용은 가능하나 넓은 면적은 금지			○	
그래픽		· 담장 등에 과도한 그래픽 사용을 금지			○	
소재색		· 최대한 제시한 색상 범위에서 유사한 색을 사용		○		
지붕색		· 건축색과 유사계열의 저채도의 색을 사용하며 지붕에 CI, BI의 적용을 금지		○		
기둥, 굴뚝		· 높은기둥이나 굴뚝은 원색의 강조색 사용을 금지		○		
패턴		· 장방향의 건축물은 세로의 면으로 분절하여 위압감이 해소되도록 함		○		
옹벽		· 건물과 색차가 없는 돌출되지 않는 색채를 사용		○		
펜스		· 펜스는 가로시설물 색채설계지침을 준수하고, 순색량 15 이하 색을 사용		○		

주) 도시, 농어촌 공통 적용

자가진단	3 : 우수	2 : 양호	1 : 보통	0 : 미흡	× : 해당사항없음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공공건축물 색채 체크리스트(일반관리구역)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평가
기본원칙		• 연속성과 상징성을 반영하며, 기능과 이용행태를 고려하여 쾌적한 느낌으로 연출		○	
주조색	범위	• 색상 Y10R~Y60R, R80B~B / 흑색량 10~30 / 순색량 2~10		○	
	면적	• 60% 이상			
보조색	범위	• 색상 Y~Y80R, R80B~G90Y / 흑색량 20~50 / 순색량 2~20		○	
	면적	• 20~30%			
강조색	범위	• 색상 Y~R30B, R80B~G90Y / 흑색량 20~70 / 순색량 2~40		○	
	면적	• 10% 이내			
사용색수		• 단색이나 2~3가지 내에서 적용	○		
연속성		• 근접한 대상물에는 동일한색이나 유사색을 적용하여 연속성을 유지	○		
유사색		• 2가지 이상의 색사용시 유사색상범위내에서 사용	○		
배색		• 주조색 또는 주조색과 보조색만 사용하여 통일된 이미지 연출 가능	○		
유리색		• 유리는 고채도 색유리를 제외하고 사용색 범위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됨	○		
그래픽		• 담장 등에 과도한 그래픽 사용을 금지		○	
소재색		• 소재색은 최대한 제시한 색상범위에서 유사한 색을 사용	○		
지붕색		• 건축색과 유사계열의 저채도의 색을 사용하며 지붕에 CI, BI의 적용을 금지		○	
마감재료		• 마감재료의 종류는 3가지를 넘지않으며,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색채를 사용	○		
옹벽		• 옹벽은 돌출되지 않는 색채, 친자연적 재료를 사용하여 조화롭게 계획	○		
지붕		• 지붕색은 갈색계열, 회색계열로 적용		○	
펜스		• 펜스는 가로시설물 색채 설계지침을 준수하고, 순색량 15이하 색을 사용		○	
건물명		• 건물상단에 CI나 건물명을 과도하게 표기하는 것을 금지		○	
마감재료		• 마감재료와 색채선정은 건축물 용도에 맞게 계획	○		
공공시설		• 공공업무시설은 신뢰감을 주는 회색조의 차분한 색채계획		○	
문화시설		• 문화시설은 난색계열의 저채도 색채로 친근감 있는 색채계획		○	
교육시설		• 교육연구시설은 중고채도의 강조색으로 경쾌한 색채계획		○	

주) 도시, 농어촌 공통 적용

자가진단	3 : 우수	2 : 양호	1 : 보통	0 : 미흡	× : 해당사항없음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공공시설물 색채 체크리스트(일반관리구역)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평가
가로시설물	기본원칙		·정체성과 안전성이 반영된 통합적인 시설물로 돌출되지 않고 주변과 조화되는 색채계획을 기본으로 함			○	
	기조색	범위	·색상 Y~Y80R, R90B~B, N / 흑색량 10~80 난지도 (2, 60) / 순색량 2~10 난지도 30)	예시	○		
		면적	·90% 이상		○		
	상징색	범위	·색상 Y10R~R10B, R90B~G50Y / 흑색량 15~70 / 순색량 2~60	예시	○		
			·5~10%				
	사용색수		·사용색은 단색이나 2~3가지내에서 적용		○		
	연속성		·근접한 대상물에는 동일한색이나 유사색을 적용하여 연속성 유지		○		
	유사색		·2가지 이상의 색사용시 유사색상범위내에서 사용		○		
	소재색		·소재색은 최대한 제시한 색상범위에서 유사한 색을 사용		○		
	배색		·과도한 색채사용을 억제하고, 단색이나 2~3가지 이내로 색채계획			○	
			·시설물의 형태감을 부각시키는 명도대비에 의한 배색 권장		○		
	정보내용		·문자, 픽토그램 등은 가로시설물색과 흑색량 30이상 차이		○		
			·문자, 픽토그램 등은 1~2가지의 색채를 사용		○		
			·문자, 픽토그램 등은 가로시설물과 조화로운 서체 사용		○		
	선적요소		·가로등, 펜스 등의 선적요소는 기조색을 사용		○		
	점적요소		·버스쉘터,휴지통 등 점적요소는 기조색 사용과 기능에 따라 상징색 사용이 가능		○		
	면적요소		·안전시설은 부분적으로 상징색을 사용하여 주목성을 높임		○		
기반시설물	기본원칙		·연속성과 상징성, 기능성을 고려하여 구조물의 형태가 부각되며 자연과 조화되도록 함			○	
	순응색	범위	·색상 G90Y~Y40R, R90B~B, N / 흑색량 2~30 / 순색량 2~10	예시		○	
		면적	·80% 이상				
	조화색	범위	·색상 G90Y~Y40R, G30Y~G90Y, N / 흑색량 10~50 / 순색량 2~30	예시	○		
		면적	·20% 이내				
	강조색	범위	·색상 Y10R~Y50R, R90B~G50Y, N / 흑색량 15~70 / 순색량 2~50	예시	○		
		면적	·5% 이내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평가
기반시설물	사용색수	· 사용색은 단색이나 2~3가지내에서 적용	○		
	연속성	· 근접한 대상물에는 동일한색이나 유사색을 적용하여 연속성 유지	○		
	유사색	· 2가지 이상의 색사용시 유사색상 범위내에서 사용	○		
	소재색	· 소재색은 최대한 제시한 색상범위에서 유사한 색을 사용	○		
	배색	· 2가지 이상의 색채 사용시 유사색상 범위내에서 사용	○		
	상징시설물	· 상징교량등은 주변지역과의 관계에서 역할에 따라 색을 선정 후 사용	○		
	대규모 시설물	· 장대교 및 500m 이상의 방음벽은 채도가 낮은 단색으로 적용	○		
	소규모 시설물	· 소규모의 시설물중 육교의 계단과 교량등은 구조물의 부위별 색을 통일감있게 사용	○		
	패턴	· 방음벽등 연속적인 구조물은 수직적 분절로 변화감 부여	○		
	복잡한 형태	· 교량 등 구조물의 형태가 복잡한 구조물은 단색으로 계획	○		
	단순한 형태	· 방음벽 등 연속적인 구조물은 수직적 분절로 변화미 부여	○		
	지하차도	· 지하차도는 밝고 경쾌한 색채를 사용하고, 과도하지 않은 그래픽 가능	○		
	조형물	· 조형물 디자인은 디자인 개념에 맞추어 자유롭게 계획 가능	○		

주) 도시, 농어촌 공통 적용

자가진단	3 : 우수	2 : 양호	1 : 보통	0 : 미흡	× : 해당사항없음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옥외광고물 색채 체크리스트(일반관리구역)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평가
기본원칙		• 가독성, 정보성, 연속성에 의해 가로 전체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색채 계획			○	
		•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지역별 이용행태를 고려한 색채 사용			○	
바탕색	범위	• 색상 G80Y~Y50R, R80B~B, N / 흑색량 10~60 / 순색량 2~30	예시	○		
글자색	범위	• 색상 all color / 흑색량 2~85 / 순색량 2~60	예시	○		
사용색수		• 사용색은 단색이나 2~3가지내에서 적용		○		
연속성		• 동일한색이나 유사색을 적용하여 연속성 유지		○		
유사색		• 2가지 이상의 색사용시 유사색상범위내에서 사용		○		
소재색		• 소재색은 최대한 제시한 색상범위에서 유사한 색을 사용		○		
가로형간판		• 가로형 간판의 판형은 동일건물에서 색을 통일하여 사용		○		
돌출형간판		• 돌출형 간판은 강조색 사용을 지양하고, 중·저채도의 색으로통일하여 돌출색을 방지		○		
지주형간판		• 지주형 간판은 색을 통일하여 사용		○		
현수막		• 현수막색은 하나의 색으로 돌출되지않게 계획		○		
차양막		• 동일 건물 내에서 차양막의 색채는 통일		○		
주거지역		• 주거지역은 저채도의 색채 사용으로 차분한 이미지 부여		○		
상업지역		• 상업지역은 중채도 이하의 색사용으로 경쾌한 이미지 부여		○		
문화자원		• 문화자원이나 자연자원 주변은 문화, 자연 배려한 색채 사용		○		
사용부위		• 옥외광고물은 사용부위에 따라 배경색과 글자색으로 구분		○		
그래픽		• 배경에 과도한 그래픽 사용 금지		○		
글자색		• 글자색은 사용색 범위내에서 배경색과 유사계열의 색 사용		○		
로고,심볼		• 브랜드 로고나 심볼 등은 순색량을 조절하여 글자색 범위내에서 적용		○		
사용규제		• 넓은 면적의 고채도색 사용은 규제(30%이하 적용)			○	
		• 빨간색이나 검정색은 간판 전체면적의 50%이상 사용금지			○	

주) 도시, 농어촌 공통 적용

자가진단	3 : 우수	2 : 양호	1 : 보통	0 : 미흡	× : 해당사항없음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특별관리구역 색채 체크리스트(경관중점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단지)

항목	지침내용	권장	필수	평가	비고
기본방향	· 구역별 대표이미지와 테마색을 중심으로 단정하고 정돈된 색채환경을 연출		○		공통
사용 색 범위	· 사용색 범위를 지정하고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여 설정		○		공통
권역구분	· 권역구분을 통한 색채이미지 부여로 권역별 특성을 구현	○			공통
용도구분	· 용도구분을 통해 건축물의 특징과 기능을 고려한 색채계획		○		공통
시설물	· 시설물의 규모와 위치에 따른 명도, 채도 위계를 설정하여 색채를 적용		○		공통
지붕	· 지붕색은 구역별로 대표이미지에 적절한 테마색을 적용하여 통일된 경관을 연출		○		공통
권역	· 해안교류권역은 푸른중심권역과 청정문화권역보다 명도를 높게 설정		○		난지도, 왜목, 도비도, 초락도, 안섬포구, 덕마리지구, 한진리지구, 석문국가산단, 송산일반산단, 아산국가산단, 삽교호관광지
주거용지	· 주거용지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편안한 이미지로 설정	○			공통
단독주택용지 사용색	· 단독주택용지는 주조색·보조색·강조색의 사용색 범위, 사용색수 등의 사용색을 설정	○			공통
단독주택용지 색사용법	· 단독주택용지는 입면색채, 지붕색채, 경계부색, 점포형주택 등의 색사용법을 설정	○			공통
공동주택용지 사용색	· 공동주택용지는 주조색·보조색·강조색의 사용색 범위, 사용색수 등의 사용색을 설정	○			공통
공동주택용지 색사용법	· 공동주택용지는 입면디자인, 측벽그래픽, 동호수 표기, 연립형 등의 색사용법을 설정	○			공통
상업용지 사용색	· 상업용지는 주조색·보조색·강조색의 사용색 범위, 사용색수 등의 사용색을 설정		○		공통
상업용지 색사용법	· 상업용지는 입면디자인, 구조물, 재료색, 고층형과 저층형, 용도별 등의 색사용법을 설정		○		공통
공업용지 사용색	· 공업용지는 주조색·보조색·강조색의 사용색 범위, 사용색수 등의 사용색을 설정		○		석문국가산단, 아산국가산단, 송산일반산단, 합덕순성테크노폴리스단지, 합덕지방산단 합덕인더스파크 일반산단
공업용지 색사용법	· 공업용지는 입면디자인, 지붕색, 그래픽, 구조물, 장방형 등의 색사용법을 설정		○		

항목	지침내용	권장	필수	평가	비고
공공용지 사용색	· 공공용지는 주조색·보조색·강조색의 사용색 범위, 사용색수 등의 사용색을 설정		○		공통
공공용지 색사용법	· 공공용지는 용도와 역할에 따라 입면디자인, 그래픽, 구조물 등의 색사용법을 설정		○		공통
가로시설물 사용색	· 가로시설물은 주조색·보조색·강조색의 사용색 범위, 사용색수 등의 사용색을 설정		○		공통
가로시설물 색사용법	· 가로시설물은 점·선·면의 사용면적과 순응·조화·강조의 공간역할에 따른 색사용법을 설정		○		공통
옥외광고물 사용색	· 옥외광고물은 주조색·보조색·강조색의 사용색 범위, 사용색수 등의 사용색을 설정		○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옥외광고물 색사용법	· 옥외광고물은 유형과 설치위치에 따라 배경색, 글자색, 배색 등의 색사용법을 설정		○		
색채관리	· 색채관리방법을 제시	○			

주) 비고란의 공통은 특별관리구역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

자가진단	3 : 우수	2 : 양호	1 : 보통	0 : 미흡	× : 해당사항없음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특별관리구역 색채 체크리스트(난지도 등 도서 및 해안/해안교류권역)

항목		지침내용	권장	필수	평가	비고
기본방향		· 남프랑스풍의 테마색을 적용하여 온화하며 밝고 경쾌한 이미지를 연출		○		공통
사용색 범위	주조색	· 색상 Y20R~Y40R, R90B, N / 흑색량 2~70 / 순색량 2~20	○			공통
	보조색	· 색상 Y20R~Y40R, R90B~B50G / 흑색량 10~40 / 순색량 2~30	○			공통
	강조색	· 색상 Y20R~Y70R, B~B50G / 흑색량 20~40 / 순색량 10~40	○			공통
사용색 면적		· 면적에서 주조색은 60-70%, 보조색은 20~30%, 강조색은 10% 미만의 범위로 적용		○		공통
사용색 수		· 사용색수는 2~3색으로 하고, 입면은 가급적 단색으로 하며 2색 이상 사용 시 유사색으로 함		○		공통
연속성		· 인접 건축물과 동일색이나 유사색을 적용하여 연속성을 유지		○		공통
배색		· 외장에 2가지 아상의 색 사용 시 사용하고 어두운 색을 하단에 적용	○			공통
주거 건축물	주조색	· 색상 Y20R~Y30R / 흑색량 5~20 / 순색량 5~10	○			공통
	보조색	· 색상 Y20R~ Y30R / 흑색량 10~20 / 순색량 5~20				
	강조색	· 색상 Y40R~Y70R / 흑색량 20~40 / 순색량 10~30				
상업 건축물	주조색	· 색상 Y20R~Y40R / 흑색량5~20 / 순색량 5~10	○			공통
	보조색	· 색상 Y20R~Y40R / 흑색량10~20 / 순색량 5~20				
	강조색	· 색상Y40R~Y70R / 흑색량20~40 / 순색량 10~30				
공공 건축물	주조색	· 색상 Y20R~Y30R / 흑색량 5~20 / 순색량 5	○			공통
	보조색	· 색상 Y20R~Y30R / 흑색량 5~20 / 순색량 5~10				
	강조색	· 색상 Y20R~Y40R / 흑색량 20~40 / 순색량 5~20				
공업 건축물	주조색	· 색상 Y10R~Y50R, R70B~B30G / 흑색량5~20 / 순색량2~5	○			공통
	보조색	· 색상 G70Y~Y60R, R60B`B80G / 흑색량 10~70 / 순색량2`~5				
	강조색	· 색상 all color / 흑색량 15~70 / 순색량 10~25				
규모		· 고층건축물은 흑색량 5, 순색량 5~10 · 저층건축물은 흑색량 10`~20, 순색량 5~10	○			공통
지붕색		· 지붕색은 색상 Y60R, 흑색량 40, 순색량 40을 사용하여 통일성을 유지	○			공통
부속물		· 창틀, 베란다, 현관문, 설비시설 등의 부속물은 외장색과 동일색 또는 순색량 10이하의 저채도색을 적용	○			공통
담장, 옹벽, 펜스		· 담장, 옹벽, 펜스 등은 건축물보다 저채도색을 사용하도록 하고 과도한 그래픽 사용을 금지	○			공통

항목		지침내용	권장	필수	평가	비고
가로시설물	기조색	·색상Y20R, R90B / 흑색량 50~70 / 순색량 5~30 ·해안가에서는 흑색량 2~5의 고명도색을 사용 가능	○			공통
	강조색	·색상 Y20R~Y70R, B~B50G / 흑색량 20~40 / 순색량 20~40의 범위에서 적용	○			공통
기반시설물	사용색	·순응색, 조화색은 색상 Y20R, N / 흑색량 5~10 / 순색량 5~10의 색에서 사용	○			공통
	배색	·단색으로 사용 ·가로등, 휴지통, 전화박스는 흰색 또는 곤색 (색상 R90B, 흑색60, 순색량 30)으로 적용	○			공통
임시시설물		·임시시설물에도 가로시설물의 색범위 내에서 색채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설치	○			공통
옥외광고물	사용색	·바탕색은 색상 Y20R~Y40R / 흑색량 10~60 / 순색량 2~30 ·글자색은 색상 all color / 흑색량 2~85 / 순색량 2~60의 범위에서 적용	○			공통
	사용색수	·옥외광고물은 바탕색을 건축물색과 동일색으로 하고, 2~3가지색 내에서 적용	○			공통
차양막		·차양막과 연결구조물은 건축물 입면색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색채를 통일감 있게 사용	○			공통
건물명		·공공건축물의 상단에 CI나 건물명 표기를 금지	○			공통

주) 비고란의 공통은 특별관리구역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

자가진단	3 : 우수	2 : 양호	1 : 보통	0 : 미흡	× : 해당사항없음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야간경관 체크리스트

용도별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평가
주거지역	· 야간의 주거환경 보호와 방법을 위해 50~70lx의 조도로 차분하고, 동적인 빛으로 연출	○		
	· 공동주택 진입문주, 녹지, 화당 등에 조명 연출	○		
	· 단지내 주요 보행로에 보행등을 설이하여 동선 유도	○		
상업지역	· 상층부의 라인을 강조하는 형태는 지양하고 전체적 윤곽을 드러내는 조명 지향	○		
	· 옥외광고물 보다는 쇼윈도우를 활용한 조명 유도	○		
	· 가로에 접한 외부공지에 수목, 녹지 등에 야간조명	○		
	· 가로변에 투광기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한 지중화 유도	○		
공업지역	· 삭막한 야간경관이 되지 않도록 20m이상의 가로변은 조명설치	○		
	· 거대벽면 및 담장에는 은은한 조명 설치로 차분한 야간경관 형성	○		
녹지지역	· 공간감을 인지할 수 있는 바닥조명 유도	○		
	· 가로등, 볼라드조명, 이벤트조명 등을 활용	○		
	· 수목의 높이에 방해 받지 않는 조명 설치	○		

주) 도시, 농어촌 공통 적용

요소별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평가
건축물	공통	· 직접광원의 노출 지양	○		
		· 조명기구가 노출되어 건축물의 미관을 해치지 않아야 함	○		
		· 현란한 빛의 움직임(색상,밝기변화,반복점멸) 지양	○		
		· 건축물의 품격을 훼손하는 원색계열의 색상사용 제한	○		
		· 옥탑부만 과도하게 강조하는 조명 지양(빛의 레벨 조화 유도)	○		
		· 건축물 조명으로 주변 건축물에 빛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함	○		
		· 실내조명과 경관조명을 함께 고려하여 조화 유도	○		
	주거 건축물	· 저층은 볼라드를 이용한 고급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	○		
		·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호하는 휴먼스케일의 방식을 적용	○		
		· 상층부만의 조명을 지양하고 중층 주거의 경우 조명을 제한		○	
		· 공동주택 측벽을 강조하는 조명 설치			
		· 투광기는 고층 주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을 지양		○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평가
건축물	상업 건축물	· 상업지역의 가로는 최소 가로조명(보안등)으로 평균조도를 유지	○		
		· 쇼윈도의 조명은 일반적으로 전반조명과 국부조명을 적절히 배치하며 두 조명의 색온도와 조도 강약의 조화가 중요	○		
		· 쇼윈도 조명시간을 일정시간까지 연장하여 커뮤니티를 확보	○		
		· 자동 점멸등 시스템을 도입하고 감광장치를 사용하여 에너지 및 유지비를 절약하도록 함	○		
		· 많은 통행량을 고려해 방해가 되는 등주 조명보다는 건물벽면에 부착하는 형식을 권장함	○		
	공공 건축물	· 분위기에 맞는 색온도 연출로 친근하고 활기 있는 분위기를 연출	○		
		· 야간활동(산책&스포츠)을 고려하여 충분한 밝기를 확보하도록 함	○		
		· 문화예술공간, 공원, 경찰서 등에 조명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조성하도록 함	○		
		·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시간변화에 따른 다양한 경관을 연출함	○		
		· 건축물 형태와 재료를 고려, 광원의 색온도를 3000K~4000K로 함		○	
오픈 스페이스	공원	· 우범화 방지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 조명 요소를 활용함	○		
		· 커뮤니티 밀집지역에는 라이트 포스트를 설치하고 진입부는 상대적으로 밝은 공간으로 연출	○		
		· 공원의 주요 장소는 5~10lx의 조도를 원칙으로 함		○	
		· 수목의 높이에 방해받지 않는 보행자 조명등을 계획함	○		
	하천 및 해안	· 습지대 및 생태 보존 및 복원지역에는 조명 사용을 지양함		○	
		· 수변 거점 등 야간의 편안하고 쾌적한 야경연출(명소화)	○		
		· 친수지역에는 가로등, 볼라드 등으로 안전성과 심미성을 고려	○		
		· 안개 등을 고려 나트륨램프의 사용 또는 플랫빔 방식 권장	○		
		· 주요 수목에 수목등 연출	○		
		· 친수구간은 야간활동을 지원하는 70lx이상의 조도로 상쾌하고 활동적인 빛으로 연출	○		
		· 주간경관에는 감상하지 못하는 조형미나 입체감, 아름다움을 끌어내는 야간경관 디자인을 권장함	○		
도시 구조물	도로	· 선적 요소의 전체 축개념에서 흐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중경 및 원경에서 고려		○	
		· 가로등의 높이 및 간격 계획시 공간감과 균형 고려	○		
		· 도시 진출입부나 시계부는 인지성 강활르 위한 열주식의 조명이나 관문 등에 대한 랜드마크 조명 유도	○		
		· 수변산책로나 자전거도로등은 해당 도로를 따라 매립 투광 바닥조명 방식을 도입하여 방향성 제공 및 연출	○		
		· 도로의 기능과 용도에 따라 램프의 종류와 조도 차별화	○		
		· 배광을 조정하여 교차로 내 도로면에만 투사되도록 등기구 설치	○		
		· 가로등에 필요한 조도유지를 위하여 눈부심이 최소화되도록 TI를 KSA 3701도로조명기준에 맞게 엄격히 통제[7]		○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평가
도시 구조물	교량	· 교량에 조명설치로 야간경관 특화	○		
		· 도로의 입체적 시설물로 식별성이 있는 조명 형성	○		
		· 주요도로의 교량 및 보행육교의 경우, 가로등, 난간 등 설치하여 야간 조형미 부여	○		
		· 고가 하부 및 교량 하부에 조명을 설치하여 공간 오브제 역할 부여	○		
가로시설물		· 가로수 업라이팅 연출로 상징성 부여	○		

주) 도시, 농어촌 공통 적용

자가진단	3 : 우수	2 : 양호	1 : 보통	0 : 미흡	× : 해당사항없음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7) 도로 조명시설의 구조 및 설치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사업표준 도로조명기준에 의함

간선도로 체크리스트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평가
국도 32	진입부	· 도시진입부에 상징공간의 설치	○		
		· IC 진입부에 상징이미지 연출		○	
	건축물	· 도로변 건축물의 입면 및 옥탑부를 특화	○		
		· 도심통과지역은 건축선 이격 후 보행공간 확보 및 미디어폴 설치		○	
		· 통경축 확보를 위한 건축물 형태 및 배치	○		
		· 공동주택 측벽색채를 주변 자연소재와 어울리는 색상 선정	○		
		· 경관을 위해하는 시설의 경우 가로수 식재 등으로 차폐	○		
	녹화 및 식재	· 보행가로에는 플랜터 설치 및 꽃길 조성	○		
		· 계절테마를 도입한 가로수 식재	○		
		· 지역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일관적인 이미지 연출	○		
		· 단절된 녹지부 생태이동통로를 설치하여 생태구간 복원	○		
	시설물	· 통합된 시설물 디자인 연출로 일체감 부여	○		
		· 교량하부 및 측면 디자인으로 미관향상	○		
		· 도로변 옥외광고물 정비	○		
		· 보도포장은 단순한 패턴으로 적용	○		
국도 38	건축물	· 자연과 조화로운 건축물 디자인 유도(국적을 알 수 없는 디자인 지양)	○		
		· 경관을 위해하는 건축물의 경우 가로수 식재 등으로 차폐	○		
		· 공장 등 산업시설에 조명설치로 이색적인 야간경관 연출	○		
	녹화 및 식재	· 해안경관과 조화로운 수종을 선정하여 테마가로수길 연출	○		
		· 중앙분리대를 활용한 녹지대 조성	○		
		· 건축물의 경계부에 녹화를 도입하여 친환경적인 경관 형성	○		
	`시설물	· 교량하부 및 측면디자인으로 미관향상	○		
		· 첨단이미지의 통합된 시설물로 일체감 부여	○		
		· 도로변 옥외광고물 통합 정비	○		
		· 보도포장은 자연소재와 어울리는 저채도 색상으로 적용	○		

자가진단	3 : 우수	2 : 양호	1 : 보통	0 : 미흡	× : 해당사항없음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조망 체크리스트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평가
조망점	산지 조망점	· 배후구릉지 능선과 조화로운 건축물 배치를 유도		○	
		· 공동주택단지나 상업건축물의 이격배치를 통한 통경축을 확보		○	
		· 산지와의 조화를 위해 신규건축물 높이제한 및 개발예상지 고도규제		○	
	수변형 조망점	· 저수지 및 하천변 건축물의 저층배치를 유도	○		
	부감형 조망점	· 조망점 내 안내판 교체 및 계단 등 노후시설 교체	○		
		· 조망점 내 식재 수종 교체 등의 조망장소 정비	○		
		· 보행 및 차량 접근로, 주차장을 설치하고, 주변 건축물을 관리	○		
통경축	조망형 통경축	· 당진시청과 아미산을 연결하는 조망통경축 확보	○		
		· 당진터미널에서 당진시청을 잇는 도로에서 30m이상의 통경구간 설정	○		
	개방형 통경축	· 신규개발시 주변 농경지와 조화롭도록 높이 및 형태, 배치 등 설정	○		
		· 통경구간내 건축물은 U자형 스카이라인 설정하고 개방감 확보	○		

자가진단	3 : 우수	2 : 양호	1 : 보통	0 : 미흡	× : 해당사항없음

※ 평가란에는 각 항목의 경관기준의 반영정도를 자가판단하여 4단계 중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함
※ 항목의 검토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 5장'조망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을 참조함

2. 보고회 주요 내용

보고회 및 경관위원회 추진 경과

연번	보고일자	보고내용
1. 착수보고	2010. 7. 16	• 기본구상 및 연구방향 제시
2. 착수연심회	2010. 9. 6	• 연구방향 및 연구방법 설정
3. 자문회의	2010. 12. 20	• 미래상 설정 및 추진전략
4. 자문회의	2011. 4. 29	• 기본구상 설정
5. 중간연심회	2011. 5. 16	• 기본계획 및 경관설계지침
6. 중간보고회	2011. 6. 7	• 기본계획 및 경관설계지침
7. 자문회의	2011. 9. 29	• 경관설계지침 자문
8. 자문회의	2011. 10. 9	• 경관설계지침 자문
9. 공청회	2011. 11. 17	• 기본경관계획(안) 주민의견수렴
10. 의회보고	2011. 12. 2	• 기본경관계획(안) 의회 사전보고 및 의견청취
11. 경관위원회 심의	2011. 12. 28	• 기본경관계획(안) 최종 심의
12. 최종보고회	2011. 12. 29	• 기본경관계획(안) 보고

추진과정상 주요 의견

착수보고(2010. 7. 16)

- 경관계획에 대한 인식 제고
- 시간, 공간의 변화에 따른 접근 전략 필요
- 시가화의 급속한 진행에 대한 준비로 경관계획 중요

착수연심회(2010. 9. 6)

- 계획수립을 위한 다분야의 참여 필요
-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유지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렴

자문회의(2010. 12. 20)

- 당진의 특성은 철강, 역동성, 서해안으로 함축
- 당진은 역사문화적 인식 및 제고 필요
- 향후 주민의 요구는 문화, 복지적 수요 증대 예상
- 미래상-목표-추진전략-세부추진전략의 논리적 정합성 유지 필요
- 경관권역 설정시 급격하게 시가화되므로 토지이용변화 양상 검토 필요

자문회의(2011. 4. 29)

- 당진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나타내는 내포의 성격을 표현
- 미래상 설정의 키워드는 산업, 역사, 문화도시로 압축
- 미래상-목표-추진전략-세부 추진전략 검토 필요
- 경관권역 초안을 생활권별로 묶지말고, 토지이용형태로 묶어야 주민이 알기 쉬움

중간연심회(2011. 5. 16)

- 천편일률적인 계획의 수립보다는 당진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 필요
- 미래상-목표-추진전략-세부 추진전략은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
- 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요 핵심 경관설계지침을 추출하여야 함
-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으므로, 중점관리구역의 개념을 정확히 하여야 함

중간보고회(2011. 6. 7)

- 신규개발지에 건축허가시 심의기준 마련 필요
- 타 실과 관련계획 및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고려 필요
- 해안경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방안 마련 필요
- 역사적 관점에서 면천읍성의 중요성 부각
- 중점조망관리점은 아미산, 몽산이 바람직
- 공공화장실 등 공공에서 선도하여 추진할 수 있는 계획 마련 필요
- 디자인 컨셉에 여성친화, UD 추가

자문회의(2011. 9. 29)

- 경관설계지침을 체계적으로 구성 필요
- 구체적인 경관설계지침 제시 필요
- 기본계획의 성격상 행정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
- 조망경관 설정시 당진은 대부분 구릉성 산지이므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추진함이 바람직
- 경관중점관리구역의 선정 근거 제시 필요

자문회의(2011. 10. 9)

- 색채 경관설계지침은 유연하게 대응하여야 함
- 옥외광고물 경관설계지침은 필수보다는 권장으로 전환하여야 함
- 건축물 경관설계지침은 건축법과의 관련선상에서 적용되어야 함
- 당진의 경관설계지침은 향후 새롭게 신축되는 건축물, 시설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최종보고회(2011. 12. 29)

-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실행력이 담보되어야 하고 이제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관건
- 당진의 발전상에 있어 디자인, 성장하는 이미지가 바람직
- 중점관리구역의 후속 추진을 위해 특정경관계획 수립이 요구됨

3. 경관계획(안)에 대한 행정절차 개최 결과

1) 공청회

- 일 시 : 2011년 11월 17일(목), 오후 2시
- 장 소 : 당진시청 대강당
- 토론자 : 임양빈 건양대학교 교수, 박천보 한밭대학교 교수, 임오연 건양대학교 교수, 안효권 당진시 의회 의원, 심상찬 당진문화연대 부회장

발언자	발언내용	조치사항	여부
박천보 교수	○경관기본구상의 미래상을 경제도시, 해안도시, 생태관광도시로 수정 제안	○미래상 수정	반영
	○선정된 경관거점 및 중점관리구역이 다소 많은 편으로, 핵심지역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함	○중점관리구역 개소 축소	반영
	○지침에서는 규제보다는 권장하는 방향으로 유도, 단계별 경관사업을 통해 구체화 필요	○권장방향으로 개편	반영
임오연 교수	○산업도시이자 해안관광도시라는 두가지 큰 강점이 양립하여 발전할 수 있는 방향 모색	○기본구상에 반영	반영
	○천편일률적인 색채계획보다는 명도와 채도의 범위 설정을 통해 유도, 당진만의 특화색을 선정하여 강조색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색채계획 별도 수립 및 반영	반영
	○조명계획에 있어서는 어느 지역에 조명계획이 필요한지 정도를 언급해주는 것이 필요	○최소기준 제시 및 야간경관계획 별도 수립 예정	일부 반영
안효권 의원	○기성품 도시가 아닌, 지역의 역사와 문화, 주민욕구를 고려한 당진만의 경관계획 마련 필요	○당진의 정체성 반영	반영
	○단순한 철강산업도시로의 전락 우려, 삶의 주거공간이자 추억이 깃드는 공간으로 조성	○문화도시를 목표에 설정	반영
	○경관이 하나의 문화라는 인식으로, 경관관리를 위한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	○최소한의 규제사항을 경관가이드라인에서 제시	반영
	○경관행정의 전문성 제고 및 주민 의견수렴 기회 확대 등 필요	○실행계획에서 제시	반영

발언자	발언내용	조치사항	여부
심상찬 당진문화연대 부회장	○인위적인 경관형성 노력이 오히려 환경파괴 유도 가능하므로 주의가 요구되며, 저탄소 시대의 야간경관계획에 대해 회의적임	○장기계획으로 야간경관은 별도 수립	일부 반영
	○우강, 면천, 순성 등의 청정지역에 공장 등 난개발을 규제하여 전원도시 이미지 형성 필요	○우강,면천, 순성은 경관권역을 청정권역으로 설정하고, 난개발 규제는 개별법에서 집행	기반영
	○실행계획에 있어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적극적 참여가 가능한 절차 및 기회 확충	○실행계획 보완	반영
방청객	○도시이미지를 좌우하는 도시의 중심부 도심(원도심 등)의 도시디자인은 매우 중요하며, 도시는 깨끗하고 정돈된 곳 뿐만 아니라 배설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당진읍 안영식)	○원도심을 중점관리구역으로 설정	반영
	○대호지면 문화유적을 묶어 올fp길 등 역사적 탐방로 조성 필요(대호지면 ○○○)	○개별사업으로 추진	미반영
	○군 차원에서 장단기적 계획을 통해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명품거리 외에도 광장 등의 랜드마크 조성하는 등 적극적인 발상 필요(당진읍 상인연합회장)	○원도심을 중점관리구역으로 설정하며, 랜드마크 조성은 후속 특정경관계획에 의해서 수립될 사항임	일부 반영

2) 의회보고

- 일 시 : 2011년 12월 2일(금), 오후 2시
- 장 소 : 시의회 회의실
- 참석인원 : 이재광외 7인

발언자	발언내용	조치사항	여부
의원 1	○시드니하면 오페라하우스, 파리하면 에펠탑처럼, 당진군을 대표하는 건축물 및 장소만들기 필요. 화물선 등 출입이 빈번한 당진항 등이 당진군을 대표하는 상징경관으로 아름답게 조성하여 당진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음	○상징경관축 설정 및 중점관리구역계획에 상징조형물 설치	반영
의원 2	○당진경관기본계획은 2025년까지의 장기계획이므로 당진천 뿐만 아니라 역천 등 당진의 하천관련 계획내용이 포괄적으로 세워져야 함	○경관계획에 삽입 및 경관설계지침에 제시	반영

3) 당진 경관위원회 심의

- 일 시 : 2011년 12월 28일(수), 오후 3시
- 장 소 : 당진시청 소회의실
- 참석인원 : 경관위원 9인
- 심의결과 : 원안 가결

발언자	발언내용	조치사항	여부
이해운	○ 지붕경사도 및 처마길이 등 치수를 규정하는 것은 민감한 사안이고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필요가 있으므로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	○ 권장사항으로 수정	반영
	○ 입면의 3종류 '이내'보다는 '내외'라는 등의 용어 사용을 통해 지침의 유연성 확보 필요	○ 권장사항으로 수정	반영
	○ 박스형 건축물은 경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부득이하게 필요하거나 요즘 디자인 트랜드일 수 있어, '박스형 건축물 지양'하는 것은 필수보다는 권장 정도가 적당	○ 권장사항으로 수정	반영
	○ 색채를 제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색채 심의에 대하여 주민과 행정의 의견이 다를 수 있음	○ 실행계획에서 소위원회로 별도 관리	일부 반영
	○ 광고물이 경관상 가장 큰 부분 차지, 앞으로 광고물의 지속적인 관리가 가장 중요	○ 옥외광고물등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거하여 추진하며, 경관설계지침에 의거하여 관리	반영
임현빈	○ 새롭게 변모되는 당진시가 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물 관리가 매우 중요, 이를 위한 강력한 규제도 필요	○ 특정구역으로 시작하여 향후 확대 예정	기추진
	○ 또한, 적용시 주민들이 따라와 줄 것인지 의문스러운 것이 사실이며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가 관건		
안영식	○ 제시된 시안을 일반적인 업종은 받아들일 수도 있겠으나 주류업종 등은 특성상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기본계획에서는 기본 골격만을 제시하고, 별도 가이드라인에서 크기, 차등적용, 글자, 도형 등을 제시(별도 옥외광고물 계획으로 수립 중)	반영
	○ 간판의 사이즈가 도로너비(차량속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야 함	○ 옥외광고물관리법을 기준으로 하여 수용	일부 반영
	○ 구도심의 경우 간판에 글자를 지양, 그림 및 도형 등을 특화시켜 특색있는 거리 조성 가능	○ 중점관리구역으로 선정후, 향후 특정경관계획으로 추진	일부 반영
	○ 다가구주택의 경우 경사지붕으로 유도하는 것 필요	○ 경관설계지침에 반영	반영
김택수	○ 획일적으로 정해놓고 가는 것보다는 개별 상업시설의 개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서, 행정과 광고주간의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예시는 권장사항으로 사업시 협의 필요	반영
임현빈	○ 특정거리 및 지역에 도식적인 간판이 세팅되면 특색있는 간판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경관설계지침상에 필수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음	○ 필수사항 최소화하여 보완	반영
채종형	○ 가이드라인 필수사항 검토 필요	○ 필수사항 최소화하여 보완	반영

4. 충남도청 관련부서 협의 의견

구분	검 토 의 견	조치결과	반영 여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전반적) ■ 당진시의 독창적 경관계획 미흡 - 경관계획은 일률적인 기준보다는 지역적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독창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황분석, 경관기본구상, 경관기본계획, 경관설계지침 등의 전반적인 내용은 어디에나 적용 가능한 일반적 내용으로 판단됨	○본 계획은 당진시의 무분별한 시가화로 인한 경관훼손을 방지코자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타 도시의 적용가능한 보편적인 내용보다는 당진시에 적용가능한 적용사례 및 특징위주로 경관현황조사, 설계지침 등을 중점적으로 보완	반영
	■ 보고서의 내용적 연계성 부족 - 현황분석을 통해 당진 경관자원의 보전·관리·형성할 과제가 도출되고, 이것이 미래상과 추진전략에 반영되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서로간 연계성 미흡	○ 경관계획수립지침에 의거하여 과제 도출 보완 및 미래상과 연계	반영
	(구체적) ▌제2장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 부문 -'1. 지역현황'(p9-) 에서는 계획 대상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당진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지역 및 당진시 역사·문화에 대한 내용이 필요함. 이를 통해 당진시와 주변과의 관계를 이해하면 당진만의 이미지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당진시 입지여건 및 역사문화 내용 보완	반영
	-'2. 경관자원조사'(p12-) 를 경관유형별 분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한, '3.색채','4. 옥외광고물'을 경관부문별 분석으로 묶어서 항목간 위계를 맞출 필요가 있음	○ 본 계획은 경관계획수립지침에 의거하여 수립하였으며, 경관유형별 분석은 농어촌경관계획 수립지침에 의거하는 용어로서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수립지침의 용어인 경관자원조사를 사용 ○ 색채, 옥외광고물은 경관계획수립지침에 의거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수립하되, 지침에서 미제시되었고, 향후 당진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코자하는 부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기술함	미반영
	- '3. 분석의 종합''(p106) 내용 보완이 필요함. 분석한 경관자원을 보전, 관리 및 형성할 대상으로 구분하여 경관기본구상 및 기본계획과 연계시켜야 함	○ 경관자원에 대해서 보전, 관리, 형성으로 구분하여 수정 보완함	반영
	- 당진시와 유사한 여건 및 미래상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해외사례분석 이 누락되었음	○ 사례검토 및 해외사례 보완	반영
	- 경관자원조사 대상의 유형 중 농어촌지역과 관련된 경관자원 요소는 "2009년 농어촌 경관계획수립요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관자원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이 필요함 · 시가지경관자원, 도시기반시설경관자원 등은 자세히 조사가 되었지만, 산림경관, 수변경관, 농어촌경관자원은 일반적 요소만을 선정하여 조사하고 있음 · 특히 농어촌 경관조사 및 분석시 당진시 농촌마을 내부의 경관자원 조사 필요 · 당진시의 경관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자원별 많은 현황사진 자료가 첨부 필요	○ 본 계획은 장기간의 골격적인 경관을 제시하고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농어촌 경관계획 수립요령에서 제시한 계획의 현황조사범위와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은 경관계획상 특정한 경관요소에 대한 실행계획을 제시하는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분석에 해당되는 내용임 ○ 다만, 본 계획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농어촌 경관조사와 관련하여서는 경관자원조사에서 보완함	반영

구분	검 토 의 견	조치결과	반영 여부
농림수산식품부(지역개발과)	▌제3장 경관기본구상 부문 – 제2장의 경관자원조사 내용을 근거로 보전, 관리 및 형성할 과제를 분류하고, 과제별 추진전략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본 계획에서는 과제와 전략을 정리하고, 과제별 추진전략은 기본구상의 목표별 추진전략을 보완	반영
	▌제4장 경관계획 부문 – 경관권역 / 경관축 / 경관거점시 범위설정이 필요함. 현재 경관중점관리구역에만 명기되어 있음 ex) 수변경관축의 경우 수변경계를 중심으로 몇m범위까지를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기	○ 본 계획의 범위 설정은 읍면 행정구역단위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해안경관에 대해서는 해안경관수립지침을 준용하되 주변 구릉성 산지까지 포함토록하여 경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일부 반영
	– 경관중점관리구역 선정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경관중점관리구역은 국계법상 향후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대상 및 경관관련사업의 시행을 전제로 하므로, 본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기준을 제시함	기반영
	–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경관중점관리구역을 설정하여, 시가지, 역사도시, 산업단지, 경관도로 등 많은 분야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당진시의 농촌마을에 대한 경관계획이 빠져있음	○ 농촌마을에 대해서는 향후 특정경관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조치	반영
	· 농촌마을이 농촌다움을 지니며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시가지계획과 같이 농촌마을에 대한 경관계획이 필요함	○ 농촌마을은 계획범위 및 공간범위의 성격상 구체적인 마을계획으로 구성요소별 경관설계지침에 농촌마을에 대한 내용을 각 경관설계지침의 세부내용으로 보완	일부 반영
	▌제5장 경관설계지침 – 경관계획에서 농촌마을에 대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설계지침 역시 도시지역의 일반적 지침만을 제시하고 있음 · 단독주택, 옥외광고물과 같은 경관설계지침도 도시지역에 맞추어 제시하고 있으므로, 도시의 단독주택, 농촌의 단독주택으로 구분하여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옥외광고물 역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분리한 설계지침이 필요함	○ 도시지역과 농촌마을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지침과 농촌마을에 적용할 지침을 별도 구분하여 제시	반영
균형발전담당관실	○ 별도의견 없음		
투자입지과	○ 경관중점관리 산업형(석문국가산업단지) 구역의 기본 및 관리방향 지침사항에 대하여는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당진직할사업단의 의견 청취 검토할 것 ○ 공업건축물 경관설계지침은 산업입지의개발에관한 통합지침에 준하는 녹지 확보비율 적용검토	○ 석문국가산업단지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거하여 녹지확보비율(10%-13%)을 적용하였으며, 산업단지 면적의 10%이상 13%미만의 녹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었으며, 본계획에서 제시된 녹지확보비율은 공업건축물로의 완충녹지 및 차폐식재등과 관련하여 기존계획을 따름 ○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상의 내용을 수용하여 본 계획의 필수사항을 권장사항으로 수정 보완	일부 반영
문화산업과	○ 별도의견 없음		

<table>
<tr><th>구분</th><th>검 토 의 견</th><th>조치결과</th><th>반영
여부</th></tr>
<tr><td>관광
산업과</td><td>○ 별도의견 없음</td><td></td><td></td></tr>
<tr><td>농촌
개발과</td><td>○ 별도의견 없음</td><td></td><td></td></tr>
<tr><td>환경
정책과</td><td>○ 별도의견 없음</td><td></td><td></td></tr>
<tr><td>수질
관리과</td><td>○ 별도의견 없음</td><td></td><td></td></tr>
<tr><td rowspan="4">산림
녹지과</td><td>○ 본 협의는 당진시 경관기본계획을 승인하기 위한 협의이나 협의내용상 산지에서의 지구·구역 등의 지정·결정 또는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의제는 본 협의에 포함되지 아니함.</td><td></td><td></td></tr>
<tr><td>○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관·고도·보존지구 지정, 「경관법」에 의한 경관·미관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등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별도 협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7조 2항의 규정에 따른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에 적합하여야 함</td><td>○ 지역지구 및 구역등의 지정시 별도 협의절차 이행</td><td>반영</td></tr>
<tr><td>○ 경관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산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20조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부합되어야 함.</td><td>○ 산지전용시 전용협의절차 별도 이행</td><td>반영</td></tr>
<tr><td>○ 특히,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산지의 표고(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의 100분의 50미만에 위치하여야 하며, 설치하려는 시설물이 자연경관 및 해안경관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되, 30ha 이상 산지전용의 경우에는 조망분석을 실시하여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td><td>○ 산지전용시 전용협의절차 별도 이행</td><td>반영</td></tr>
<tr><td rowspan="2">건설
정책과</td><td>○ 기본경관계획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사항의 반영 및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 등 아래 사항을 포함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td><td></td><td></td></tr>
<tr><td>- 도시기본계획상 경관계획의 기본목표, 기본구상 등이 상이한바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목표 및 구상에 부합되도록 검토</td><td>○ 도시기본계획상 경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및 추진전략의 내용을 포함여부 검토
<table>
<tr><th>도시기본계획</th><th>기본경관계획</th><th>비고</th></tr>
<tr><td>자연경관의 보존 및 활용</td><td>자연친화적이고 건강한 정주환경 으뜸도시</td><td>포함</td></tr>
<tr><td>도시정체성의 향상</td><td>세계로 발돋움하는 미래형 경제도시</td><td>포함</td></tr>
<tr><td>쾌적한 생활공간 형성</td><td>삶이 풍요로워지는 문화도시</td><td>포함</td></tr>
<tr><td>개성있는 지역이미지형성</td><td>누구에게나 매력있는 생태관광도시</td><td>포함</td></tr>
</table></td><td>반영</td></tr>
</table>

구분	검 토 의 견	조치결과	반영 여부
건설 정책과	-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경관축을 녹지축, 수계축, 도로축으로 구분설정하고 있는바 경관계획의 경관축 위치 및 연결의 적정성 검토	○ 경관계획수립지침에 의거하여 기 반영 ○ 연결의 적정성 검토는 도시관리계획수준에서 적용될 사항으로 특정경관계획수립시 적용	기반영
	- 기본경관계획의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기초현황 및 종합분석 결과에 따라 당진시 경관의 부족한 부분(과제)을 도출하여 목표 및 추진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 경관계획수립지침에 의거하여 보전,관리,형성할 경관 대상에 대하여 제시	반영
	■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과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본 기본경관계획에 담아 추진하는 방안 검토		
	○ 경관설계 지침은 최소한의 원칙만(건축허가기준 등 활용)을 계획하여 향후 실천단계에서 유연성이 확보되도록 검토	○ 경관설계지침은 장기간의 계획으로 포괄적으로 제시함(p326)	기반영
	○ 경관자원조사 분석의 시가지 경관자원 중 황해경제 자유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은 현황에서 제외(P26)	○ 현황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 명기하지 않음	기반영
도로 교통과	○ 별도 의견 없음		
치수 방재과	○ 하천구역 내 수변경관은 하천기본계획과 하천시설 기준에 적합토록하고 친수공간조성 등은 치수에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으로 계획하여야 함	○ 향후 하천구역내 수변경관시설 설치시 하천시설 기준에 적합토록 계획	반영
항만 물류과	○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에 포구경관 창출을 계획하고 있는 등 제3차 전국항만 기본계획에 불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402호(제3차 전국항만 기본계획)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당진항을 관리하고 있는 평택지방 해양항만청과 협의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402호에 의거하여 성구미항과 안섬포구 경관계획은 제외	반영

5. 충청남도 경관위원회 심의 의견

구분	검 토 의 견	조치결과	반영 여부
이정수 위원	1.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기본경관계획”으로서 위계/골격을 정리하시기 바람	○ 기본경관계획 수립지침에 의거하여 체제 수정·보완	반영
	2. 보고서내 분류, 유형, 용어 등을 통일하시기 바람	○ 수립지침에 의거하여 용어통일(경관자원조사, 경관구상 통일성 유지)	반영
	3. 색채, 야간경관 등 체크리스트 등은 기본경관 수준에서 정리하고 별도로 세심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	○ 경관설계지침을 일반관리구역과 특별관리구역으로 구분하여 수정·보완	반영
	4. 원고기술과 관련 분석, 시사점 등을 정리하여 본 보고서에 적용 기술바람.	○ 사례검토, 경관자원조사 시사점 수정 보완	반영
박천보 위원	1. 청정자연권역은 문화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청정문화경관(권역) 정도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 권역 명칭 변경	반영
	2. 사업계획에서 단기와 중장기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중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시기 구분하여 제시	반영
	3. 농어촌경관계획을 수립 지침으로 들어왔는데, 본 내용에서도 도시와 농어촌경계부의 관리방향이 포괄적으로라도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함	○ 농어촌경관계획의 기본방향을 미래상, 목표, 추진전략을 보완 ○ 경관설계지침에서 농어촌과 도시지역을 구분적용토록 수정 보완	반영
	4. 부문별로 권장과 규제의 지침이 제시되어 있는데 권장, 규제 내용이 유사한 것도 있으므로 재차 검토하여 정리 할 필요가 있음	○ 당진시 경관관련부서에서 재검토 (도시과, 건축과,기업지원과,산림축산과, 항만수산과, 환경과, 교통재난과, 관광개발사업소 등)	반영
최정우 위원	1. 도·농 복합 시이면서 산업시설이 다수 입지하는 당진시의 특성에 맞춰서 기본경관계획의 목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당진시의 경관적 특서에 부합토록 목표, 추진전략의 전면 수정·보완	반영
	2. 당진시 경관관리의 방향과 지침제시에 있어서 시설별로 일반지침과 특별지침으로 나누어 제시 하는 것이 요구됨 – 공업건축의 색채, 식재차폐 – 공동주택단지의 색채, 야간경관, 입면차폐율, 입면적 규제 등 – 단독주택, 농촌주택의 색채관리, 지붕형태, 재료 – 소규모시설(농업창고 등) 색채관리 등 – 필요시 의무사항/권장사항으로 제시하여야 함	○ 일반관리구역과 특별관리구역으로 구분하여 경관설계지침을 제시하였으며, 특별관리구역은 경관중점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단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경관협정구역으로 설정 ○ 경관요소별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업건축물, 옥외광고물, 색채관련하여 제시 ○ 소규모시설은 체크리스트에 개발행위 관련하여 위원회 평가사항으로 제시	반영
	3. 상위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유지가 요구됨 – 충남도 기본 경관계획(수립 중) 참조	○ 충청남도 기본경관계획의 주요내용 수렴	반영
	4. 해안지역이 많은 특성을 감안해서 해변산업시설, 자연경관 등에 대한 경관관리 보완 요망	○ 목표 및 추진전략 수정, 해안교류권역 계획내용 수정·보완, 공업건축물을 특별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 제시	반영

구분	검 토 의 견	조치결과	반영 여부
임재일 위원	1. 광고물은 지역별(중점 상가지역, 준주거지역)로 좀 더 구체적인 내용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음. 즉 지역에 따라 점포당 숫자, 층별 방향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광고물의 구체성을 용도지역별로 구분하지 않고, 특별관리구역을 설정하여 제시 ○ 점포당 숫자, 층별방향은 충청남도의 옥외광고물조례를 수용	일부 반영
	2. 공공시설물은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시설물 인증제 시설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반영	기반영
정동섭 위원	1. 관련계획(충남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나 국내외 사례의 경우, 본 계획 내용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내용 보완 필요	○ 국내 안산, 평택, 포항, 광양, 아산 추가 검토 및 보완 ○ 국외 오사카, 키타큐슈, 고베, 빌바오, 피츠버그, 글라스고우 추가검토 및 보완	반영
	2. 당진시와 인접하는 아산시 등의 관련계획 검토 필요		
	3. 경관축, 경관거점 등 경관의 기본골격 구상은 기 수립되고 있는 충청남도 기본 경관계획안 내용과의 정합성을 갖도록 반영 필요	○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해당 검토 시 모두 수용	반영
	4. 경관 중점관리구역, 경관설계지침에 정리되어 있는 권장항목, 필수항목, 구분 선정기준 정리 요망	○ 필수항목, 권장항목을 당진시 관련실과와 재협의 하였고, 필수항목을 최소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해당내용을 경관설계지침에 주로 처리	반영
	5. 부록 부문의 체크리스트의 활용방안 정리 요망	○ 활용방안 정리하여 제시	반영
	6. 경관사업 부분에 주민참여와 관련하여 적용가능성 검토	○ 향후 경관법 개정에 맞추어 적용토록 하며, 우선 당진문화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인식전환부터 우선 추진	반영
임오연 위원	1. 색채 경관설계지침의 경우, 권역별/지구단위계획별/용도별에 따라 서로 상충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여 정리해 주시기 바람	○ 적용시 문제시 되는 권역별 색채에 대해서는 융통성있도록 해안교류권역의 명도를 높게 설정하여 적용	반영
	2. 당진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특성과 상징색채를 가능하면 살려주시고, 필요하다면 당진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것을 검토 한 후에 추가 요망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도서 및 해안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제시 ○ 특별관리구역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업시설, 가로시설물, 옥외광고물등에 대하여 지침을 별도 제시	반영
	3. 옥외시설물 정비 시 주민 참여시 잇점 및 제도 등에 대한 내용은 정리해 삽입 요망	○ 기본경관계획의 내용적 위계상 경관조례에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의 내용을 첨부 ○ 주민참여와 관련한 부분은 향후 경관법 개정에 맞추어 당진문화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지속 협의 추진 ○ 경관홍보 및 계몽방안에 경관교육 및 심포지엄 개최 등을 삽입	일부 반영

6. 충청남도 경관위원회 조건부 의결에 대한 조치

구분	검 토 의 견	조치결과	반영 여부
최정우 위원	1.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경관설계지침에 있어서 20-30%를 차지하는 보조색의 색채가 너무 짙어서 도면예시와 어울리지 않아서 보완 요망	○ 도면예시 수정·보완	반영
	2. 공업건축물과 공공건축물의 색채 경관설계지침에서 주조색이 50-60%를 차지하지 않는 도면예시가 있고, 강조색에 대한 도면예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보완 필요	○ 도면예시 수정·보완	반영
	3. 목표3의 전략2 조화롭고 활력있는 유희공간 조성은 수정 검토 요망	○ 조화롭고 활력있는 생활공간으로 수정·보완	반영